

**경찰의 범죄피해자지원시스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의 범죄피해자지원시스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범죄수사연구실

선임연구관 정 지 운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제2장 범죄피해자보호관련 법적 근거	8
제1절 의의	8
제2절 헌법상의 근거	12
1.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12
2. 형사절차에서의 의견진술권	15
제3절 범죄피해자보호관련 법률	20
1. 의의	20
2. 범죄피해자보호법 및 범죄피해자구조법	24
3.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29
4. 기타 범죄피해자관련법률	31
제3장 범죄피해자지원기관과 개선방안	44
제1절 의의	44
제2절 범죄피해자지원기관	45
1. 일반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관	45
2. 특정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관	52
제3절 범죄피해자지원시스템의 개선방안	53
1. 구조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5

2. 역할분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9
3. 홍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2

제4장 경찰의 범죄피해자지원제도와 개선방안 70

제1절 경찰의 범죄피해자지원제도	70
1. 의의	70
2.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인권보호센터	72
3. 범죄피해자대책관·범죄피해자 서포터	73
4. CARE팀(피해자심리 전문요원)	75
5. ONE-STOP지원센터	76
제2절 경찰의 범죄피해자지원시스템의 개선방안	78
1. 의의	78
2. 경찰 조직시스템의 개선방안	85
3. 경찰 교육시스템의 개선방안	91
4. 경찰 연구시스템의 개선방안	98

제5장 결론 101

참고문헌	105
부 록	112

<표 차례>

<표 1>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현황	22
<표 2>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개정관련 발의내용	26
<표 3> 2008년 피해자심리전문요원 활동실적(죄종별)	76

<표 4> 2008년 피해자심리전문요원 활동실적(활동별)	76
<표 5> ONE-STOP지원센터현황(16개소)	77
<표 6> ONE-STOP지원센터 운영실적('08)	78

<그림 차례>

<그림 1>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72
<그림 2> 피해자보호실무위원회	73
<그림 3> 인권국 신설 제1안	87
<그림 4> 인권국 신설 제2안	87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근대 이후의 형사절차 발전과정은 가해자(피의자나 피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¹⁾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형사절차 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의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²⁾는 ‘잊혀진 존재’(forgotten person)³⁾였다. 범죄피해자는 국가의 법집행 과정에서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고, 법학자나 범죄·사회학자들의 연구대상에서조차도 배제되어 있었다.⁴⁾

- 1) 「고문금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보장」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등 억울한 범인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제도는 많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사람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지 말라”는 격언이다(김용세·김재민, 범죄현장에서의 피해자보호와 경찰관 교육방안, 치안정책연구소, 2006, 1면).
- 2)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신)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제1항1호).
- 3) 전통적 형사사법시스템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상적인 것은 아니었다. 국가가 형사사법에 관한 권한을 독점하고 특정한 행위유형을 범죄로 규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개인의 권리 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 또한 국가가 피해자 이익의 대표자를 자임하였으므로 피해자는 자신이 관련된 형사사건 처리절차에서 국외자로 전락하고 말았다(김용세·류병관, “피해자학의 발전과 피해자 보호의 최신 동향”, 피해자학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2, 138면); 김성돈,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을 위한 회복적 패러다임의 실천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6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8, 5면; 김현철, “2010년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중점 추진방향”, 범죄피해자의 피해실태와 보호·지원정책, 제1회 형사사법포럼 자료집, 법무연수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61면; 도중진,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고찰”, 피해자학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2, 173면; 윤희중, “일본의 범죄피해자 지원네트워크 구축과 피해당사자에 관한 고찰”, 피해자학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3, 189면.
- 4) 형사정책의 근대화, 합리화가 문제가 되었던 때에도 가해자인 범죄자의 처우와 시설 내 또는 사회 내에서의 범죄자의 처우가 당면 문제였다. 형사정책의 대상으로서 피해자가 문제된 것은 19세기 말 범죄실증학과, 사회학적 관점에서 ‘범죄피해자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피해를 받은 결과 생활고에 빠져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는 피해자의 경제적·정신적 위기에 적절한 대응을 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비롯되었다. 범

그러나 60여 년 전 헨티히(Hans von Hentig)의 연구⁵⁾를 계기로 시작된 범죄피해자에 관한 관심의 확대⁶⁾는 몇몇 국가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키면서,⁷⁾ 연구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⁸⁾ 이러한 연구들을

죄의 피해를 범죄발생의 사회적 원인의 하나로 취급한 것이다(미야자와 고이치/장규원 역, 피해자학 입문, 길안사, 1999, 30-31면); 長井 進, 犯罪被害者の心理と支援, ナカニシヤ出版, 2004, 2면.

- 5) 피해자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헨티히가 「범죄자와 그 피해자(The Criminal and His Victim, 1948)」라는 저서에서, 피해자측의 사정도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범죄현상에 대한 종합적 고찰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이건호, 범죄피해자 구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24면); Ann Wolbert Burgess-Chery Regehr-Albert R. Roberts, Victimology, JONES AND BARTLETT PUBLISHERS, 2010, 38면.
- 6) 멘델존(Benjamin Mendelsohn)을 비롯한 범죄학자들은 범죄피해자에 제한하지 않고 그 이외의 정치, 기술, 교통기관 등의 모든 피해자들을 연구하는 등 ... 헨티히와 엘렌베르거(jEllenberger)는 범죄피해자에 초점을 맞추고 범죄자와 피해자의 상호간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 1957년에 영국의 사회운동가인 마저리 프라이(Margery Fry)는 ... 범죄피해자가 받게 되는 고통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새로운 범죄피해자보상제도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이건호, 위의 책, 24-25면).
- 7) 1964년 뉴질랜드는 세계 최초로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범죄피해자보상 프로그램을 제도화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 다음 해에는 영국과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 범죄피해자보상프로그램이 제도화되었고, 그 이후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유럽의 국가들과 미국의 연방정부 및 각 주들은 앞다투어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입법하거나 실행시키기에 이르렀다(이건호, 위의 책, 25-26면); 1985년 11월 29일 국제연합은 “범죄 및 권력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칙의 선언(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을 채택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관심을 촉구하였다. 그 이후, 전세계적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학문적, 정치적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되었으며(이효원, “범죄피해자의 헌법상 기본권 보호”, 서울대학교 법학 제50권 제4호(통권 제15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82면); 이 선언은 피해자의 화해나 배상을 촉진시키는데 적절한 비공식적 갈등해결절차 즉 조정이나 중재 등을 적극 활용할 것(제7조), 가해자나 책임있는 제3자에 의한 배상(제8조), 피해배상을 제재로서 형벌에 부과하여 조건으로 활용할 것(제9조)을 권고하고 있다(도중진, 앞의 논문, 174면).
- 8) 김용세, “일본에서의 피해자학 연구동향”, 피해자학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 45-67면; 노성호, “호주의 피해자학 동향”, 피해자학연구 제8호, 한국피해자학회, 2000, 5-25면; 류전철, “오스트리아-스위스에 있어서 피해자학 연구동향”, 피해자학연구 제8호, 한국피해자학회, 2000, 28-49면; 박강우, “프랑스에서의 피해자학 연구동향”, 피해자학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 71-86면; 박철현, “캐나다의 피해자학 연구동향”, 피해자학연구 제8호, 한국피해자학회, 2000, 50-73면; 이순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최근 피해자학 연구동향”, 피해자학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 3-25면; 진수명,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피해자학 연구동향-피해조사를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제8호, 한국피해자학회, 2000, 77-97면; 최석윤, “미국에서의 피해자학 연구동향”, 피해자학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 27-44면.

반영하여 각종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도 1992년 4월 25일 한국피해자학회가 창립된 후 한국피해자학회를 중심으로 범죄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연구⁹⁾가 집적되고 있으며,¹⁰⁾ 법무부와 검찰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효과적인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의 활성화를 제기하는 연구들을 보면 ‘경찰’의 범죄피해자를 위한 적극적인 기여를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면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효과적으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는 경찰이기 때문이다.

범죄예방·진압 및 범죄수사 등 범죄와 가장 밀접한 활동을 하고 있는 형사사법기관은 경찰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이 이와 같이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로 평가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문가로 평가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국민의 경찰로서 거듭나고자 수 십 년간의 지속해 온 경찰의 노력에 비추어 본다면 경찰이 범죄피해자를 위해 많은 힘을 투입해야 하겠지만, 질서를 유지하고 새롭게 발생하는 신종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담당하여야 하기 때문에 범죄피해자를 위해 경찰에게 기대되는 범죄피해자로부터의

9) 우리나라에서 피해자학에 관한 최초의 문헌이 등장한 것은 ... (이장열, 피해자학이란, 교정 12호, 1971) ... 었다(김성돈, “우리나라 피해자학의 연구동향”, 피해자학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 87면).

10) 첫째, 법학과 형사정책학자들에 의한 피해자 지원방안에 관한 법제도 연구(배철효, 양경규 2007; 오영근, 이천현 2005; 장필화, 김정희, 박종선, 안수진, 이경환, 이미경, 이영란, 조중신 2003; 김현철 2005 등), 둘째, 사회과학자들이 수행한 여성과 미성년자, 노인 등의 취약계층이 피해자인 범죄-가정폭력, 아동학대,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노인학대 등-의 피해특성과 보상지원체계에 관한 연구(김지영, 김기범 2007; 김지영 2009; 김상균 2000; 송광섭 2004; 이수정, 강윤희 2002 등), 셋째, 국민일반의 범죄피해실태에 관한 조사(김지선, 김지영, 홍영오, 박미숙 2007). 이러한 연구들은 우리 사회에서 피해자에 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피해자 인권에 관한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김지영, “강력범죄 피해자와 피해자가족의 피해실태”, 범죄피해자의 피해실태와 보호·지원정책, 제1회 형사사법포럼 자료집, 법무연수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11면); 김지선·이동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현황 및 활성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25면.

요청을 충족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즉, 현재의 한정된 경찰인력과 예산으로 새롭게 범죄피해자를 위한 적극적 활동을 하기는 쉽지 않다.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경찰이 범죄피해자를 위한 세계적인 변화에 보조를 맞추면서 경찰의 위상이 한 단계 도약하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관한 고민을 하게 된다. 그리고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노력을 효율적으로 확산시키면서, 국민의 경찰로 국민에게 인식되기 위해서는 경찰의 범죄피해자지원¹¹⁾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옳은가에 관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해답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국가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책무가 있으며,¹²⁾ 이미 범죄로 인한 피해를 당한 국민에 대하여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배려를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경찰의 범죄피해자지원시스템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경찰의 범죄피해자를 위한 효과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한가를 중심으로 논함으로써, 경찰의 범죄피해자를 위한 노력을 증진시킬 수 있

11) 피해자지원이란 일반적으로 1950년대 이후 북미와 유럽에서 주로 민간자원봉사조직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피난처 제공, 정신적, 심리적 지원, 재활지원, 기타 법률적 조언과 구조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는 이미 1970년대 이후부터 민간차원의 피해자지원이 한계에 달했다는 인식에 따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추진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피해자지원은 개인이나 민간단체의 사적 활동에 한정하여 이해할 필요가 없다(김용세·류병관, 앞의 논문, 168-169면); 지원주체가 누구인가를 불문하고,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정신·심리적 부조 및 법률구조를 비롯한 일체의 피해자 지원시책을 통틀어 피해자지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당하다(김지선·이동원, 위의 책, 31-32면).

12) 국가적 헌법은 범죄투쟁의 영역에서 약자인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며,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치국가의 틀 속에서 그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담한다(이진국, “회복적 사법과 형사사법의 관계에 관한 소고”,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6, 83면); 국가의 형벌권이 민사분쟁의 해결도구는 결코 아니다. 그러나 범죄의 발생을 미리 막지 못한 것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있고, 범죄로 인한 피해회복을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할 수도 없고, 나아가 범죄인의 처벌을 위하여 피해자의 협력이 불가결하다고 한다면, 국가로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회복을 구할 때에 형사절차를 활용하는 것을 일정한 범위에서 허용해야 할 것이다(최병각, “피해자의 형사절차 활용방안”, 피해자학연구 제8호, 한국피해자학회, 2000, 160면); 2010년 5월 14일 법률 제10283호로 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은 제4조에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에서는 ‘국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그럼으로써 우리 경찰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여건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경찰이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수행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국민의 경찰로서 위상이 재정립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범죄피해자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는 요즘 범죄피해자보호법이 개정되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 제정되면서,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이 진일보하고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범죄피해자가 국가적 관심과 학계의 연구 증대를 통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보다 일찍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범죄피해자보호 시스템을 구축하였던 선진국의 형태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이 실질적인 범죄피해자를 위한 역할에 일익을 담당한다면 경찰의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호기가 될 것이며, 경찰의 통한 국가의 책무가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경찰의 범죄피해자지원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우선 제2장에서 ‘범죄피해자보호관련 법적 근거’를 고찰한다. 범죄피해자를 위한 제도는 장기적으로 국가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며, 범죄피해자에 관한 관심과 연구는 타인이 아닌 우리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헌법상의 근거’(제2절)에서는 우리 헌법이 인정하는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제30조)과 형사절차에서의 의견진술권(제27조제5항)을 중심으로 그 규범적 의미 등을 고찰함으로써 범죄피해자가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에 관한 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범죄피

해자보호관련 법률’(제3절)에서는 2010년 5월 14일 개정됨으로써 범죄피해자보호법과 범죄피해자구조법이 통합된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중심으로 제개정과정과 새로운 범죄피해자보호법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고, 같은 날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의 목적, 제정의 의의, 기금의 조성 및 관리 등을 조문을 통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기타 범죄피해자관련 법률에서는 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②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③ 법률구조법, ④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⑤ 성폭력범죄의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⑥ 아동복지법, ⑦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⑧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을 고찰한다.

제3장인 ‘범죄피해자지원기관과 개선방안’에서는 ‘범죄피해자지원기관’(제2절)에서 일반범죄피해자지원과 특정범죄피해자지원기관으로 구분하여 고찰한다. 일반범죄피해자지원기관은 법무부와 검찰을 중심으로 설립이 지원되어 활동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특정범죄피해자지원기관은 대표적인 범죄피해자지원기관인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을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범죄피해자지원시스템의 개선방안’(제3절)은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기관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면서, 각 기관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가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조상의 문제점’, ‘역할분산의 문제점’, ‘홍보의 문제점’ 등을 제기하고 각각 타당한 개선방안을 개별적으로 제안한다.

경찰도 범죄피해자를 위한 자체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제4장 경찰의 범죄피해자지원제도와 개선방안에서는 우선 현재 경찰의 범죄피해자지원제도(제1절)를 고찰하고자 한다. 범죄피해자보호규칙(경찰청훈령)에서 규정하는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위원장 경찰청차장)와 피해자보호실무위원회(위원장 수사국장)가 있으며, 범죄피해자를 위한 구체적인 조직으로 ① 인권보호센터, ② 범죄피해자대책관, ③ 범죄피해자서포터, ④

피해자심리 전문요원, ⑤ ONE-STOP지원센터 등이 활동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찰 자체의 범죄피해자를 위한 조직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지만, 경찰의 범죄피해자를 위한 활동은 좀 더 확대되고 실질화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경찰의 범죄피해자지원시스템의 개선방안(제2절)을 경찰조직시스템과 교육시스템 그리고 연구시스템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제5장은 결론으로 경찰이 범죄피해자지원시스템이 어떻게 언제 변화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주로 문헌연구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에서 간행된 범죄피해자를 위한 범죄피해자학회·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단행본과 논문 그리고 경찰청·검찰청의 문헌이 주된 연구문헌이다.

제2장 범죄피해자보호관련 법적 근거

제1절 의의

범죄피해자는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¹³⁾ 형법과 특별형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구체적으로 분류한 경우 각각의 범죄에는 가해자인 범죄인과 피해자인 범죄피해자가 존재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위험을 완전하게 제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떤 사고나 사건에 의해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행하는 피해자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국가 발전을 위한 기반’을 위한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국가의 기능이 된다.¹⁴⁾

피해의 유형 중에는 가해자를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지진·태풍·해일 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와 국가 간의 갈등으로 발생하는 전쟁의 피해 등이 그것이다. 전자는 가해자가 없는 경우이며, 후자는 가해자를 특정하여도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원상회복을 요구하기가 곤란한 경우이다.¹⁵⁾ 그리고 피해자 없는 범죄(Crime without victims)라는 개

13) 범죄피해는 유형적 피해와 무형적 피해로 나눌 수 있다. 유형적 피해는 신체적·재산적 손상으로 대표된다. 비폭력적 재산범죄가 재산손실만을 입힌다면 대인범죄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손상과 아울러 간접적인 재산손실을 초래하는 좀 더 심각한 유형의 범죄이다. 이와 같은 피해가 가시적인 것이라면 비가시적 침해는 훨씬 다양하게 나타난다. 공포감과 불안감, 사물에 대한 통제력의 약화, 신뢰감의 상실 등 정신적 고통은 대부분의 범죄에 보편적으로 보인다. 더욱 심각한 경우는 정서장애와 정신질환 등 중병의 정신병리적 특성이 나타난다. 정신적 고통은 비단 심각한 범죄에 국한된 증상이 아니며, 경미한 범죄라 할지라도 심각한 범죄에 못지않은 소외감과 고립감, 굴욕감과 모욕감 같은 증상이 초래될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전수영, 범죄피해자 보호방안, 한국학술정보, 2009, 21-22면).

14) 범죄로 인해서 직접 간접으로 발생하는 피해들을 저지하는 것이 국가 권력이 존재하는 하나의 이유라는 점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이건호, 앞의 책, 23면).

15) 제1차 대전 이후 독일에 대한 승전국들의 과도한 전쟁비용 배상요구가 제2차 대전으로 진

념도 존재한다. 이 개념의 배경에는 비범죄화¹⁶⁾에 대한 주장과 함께 비형벌화·비시설화가 있다.¹⁷⁾ 피해자 없는 범죄의 유형으로는 환경범죄, 마약범죄, 경제범죄 등이 예로 제시된다. 그 이유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보편적 법익침해이기 때문이라고 이해한다.¹⁸⁾ 하지만 이 경우에도 피해자를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나 기타 이유 때문에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뿐 피해자가 없는 범죄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¹⁹⁾

피해자를 특정하기 곤란하거나 어떤 이유 때문에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경우 국가(기관)는 피해를 입은 국민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어떤 이유 때문이라도 병

행되는 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일제 강점기 하에 일본에 의해 입은 우리나라의 전국적인 인적·물적 자원의 강탈과 주권상실 등에 대한 보상과 배상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최근의 독도에 관한 일본의 입장은 가해(과거사)에 관하여 반성하지 않는 태도이다. 또한 한국전쟁 중 남침한 북한에 의해 입은 피해에 대하여 보상과 손해배상 등 기타 사항에 대해 아무 것도 요구하지 못했다. 현대사회에서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것과 같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듯하다.

- 16) 비범죄화라는 주장이 나온 배경에는 미국내의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회정세로서는 베트남 전에 대한 반전(反戰) 기운이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수렁에 빠진 것처럼 수습의 전망이 없는 전쟁에 많은 군인이나 돈을 쏟아 붓고 있던 정부, 정치가, 사회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나 분노, 전장에서 공포를 잊기 위해 마리화나 등의 약물에 손을 대는 젊은 병사들, 그리고 그들이 귀국한 후 그 습관을 많은 젊은이들에게 유행시킴으로써 젊은이의 문화로서 자리 잡았던 사정이 있다. ... 즉 마약이 젊은이들 사이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철저히 규제한다면 엄청난 전과자가 생기고, 교도소는 마약범죄자로 넘쳐나게 될 정도로 손을 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미야자와 고이치/장규원 역, 앞의 책, 138-144면).
- 17) 이들 주장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사상은 범규범, 특히 형사법에 위반된 행위에 대해 형법이나 형벌로 대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전근대적 발상에서 벗어나 형법이나 형벌의 힘에 의한 해결이라는 사고방식에 제동을 걸고, 오히려 형사법은 최후의 수단(ultima ratio)으로서 유보하고 그에 앞서 사회적 규범, 민사법, 행정법 등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다(미야자와 고이치/장규원 역, 위의 책, 137면).
- 18)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보편적 법익은 개인적 법익의 총체로 보아야 하고 사회적 법익과 국가적 법익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제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을 경우가 있지만 범죄피해의 규모가 클 경우 또는 범죄피해의 정도가 심각할 경우에 결국 개인적 법익의 침해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많다(이찬엽, “형사법상 피해자의 지위와 인정범위에 관한 소고”,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6, 175면).
- 19) 이찬엽, 위의 논문, 176면.

들고 약해지면 결국 그 피해는 국가가 입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형법학이나 형사실무에서 범죄피해자가 ‘법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rechtliches Nichts)으로 취급받아 온 것은 형법의 본래적 과제가 법익의 보호에 맞추어졌기 때문이며, 형법학에서는 피해자를 구체적인 범죄의 ‘현실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다양한 형벌법규가 보호하는 법익주체인 ‘잠재적 피해자’로 설명하여 왔다.²⁰⁾

범죄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리고 범죄의 피해는 단순하게 그 사건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손해로만 그치지 않는다.²¹⁾ 이러한 현상은 단순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나타난다. 어떤 단순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개인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큰 타격을 입기도 한다.²²⁾

2008년 총 범죄 발생 건수는 2,063,737건(인구 10만 명당 4,246건 발생)으로 전년(1,836,496건)에 비해 12.4% 증가하였다. 범죄유형별로는 형법범이 6.9% 증가한 885,671건이고 특별법범은 16.9% 증가한

20) 국가 형벌의 정당성에 관한 이론적 기초를 이루고 있는 형벌목적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현실적인 피해자의 관점이 고려될 수 있는 통로는 원칙적으로 봉쇄되어 있었다. 책임상쇄를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응보이론에서도 범죄자에 대한 정당한 형벌부과가 관건이 되고 일반예방목적에서도 피해자는 잠재적 피해자로서만 의미를 가졌을 뿐이었으며, 특별예방목적에서의 관점에서도 일면적으로 범죄자의 재사회화에만 초점을 맞춘 목적설정 때문에 피해자의 관점을 고려할 여지는 현실적으로 없었다. ... 이러한 상황에서 형벌의 부정적 효과는 범죄자에 대한 낙인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예봉을 벗어나기 위한 범죄자의 역공은 형사절차 속에서 증인으로 등장하는 피해자에게 이차피해를 당할 위험만 가중시킬 뿐이었다(김성돈, 앞의 논문, 8-9면).

21) 범죄의 결과는 피해자 자신뿐 아니라 가족 전체에 고통을 주는데, 지금까지 피해자의 개념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 국한되어 있었다. 피해자 가족이 겪는 고통은 살인범죄뿐 아니라, 기타 강력범죄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과 같이 혈연의식이 강한 사회에서는 가족 구성원 중의 한 명이 범죄로 인한 피해를 당하였다면, 가족 전체의 안녕이 위협받게 된다. 또한, 범죄에 의한 피해는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후유증 뿐 아니라 장기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 피해자들은 피해를 준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뿐 아니라, 생활전반의 안전을 항상 염려하며,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를 범죄유발자로 보지 않을까 하는 피해의식으로 괴로워하게 된다(김지영, 앞의 논문, 11-12면).

22)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으면 경제활동이 중단될 수밖에 없으며 치료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실직 당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부상이 완쾌되지 못하고 장애나 후유증이 남으면 새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다(신부용, “교통사고 피해 연 34만 명이 운다”, 동아일보 2010.1.14).

1,178,066건이었다.²³⁾ 2008년 발생한 범죄 중 절도범죄는 223,216건, 사기범죄는 202,132건, 횡령범죄는 26,082건, 배임범죄는 4,743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은 12,804건, 살인범죄는 1,109건, 강도범죄는 4,811건, 폭력범죄는 305,508건이었다.²⁴⁾

최근 선진국들은 자국민들이 그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적극적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각종 복지정책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을 위한 범죄피해자지원제도는 선진국들의 이러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것이다. 범죄피해자의 경우는 불시에 원하지 않던 최악의 상황에 내 던져짐으로써 좌절하게 된다.²⁵⁾ 그 결과 범죄피해자가 속한 일부 가정은 파괴(해체)되기도 한다.

최종적으로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소홀한 국가는 국가의 중요부분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²⁶⁾

23) 경찰청, 2009 경찰백서, 2009, 89-90면; 2008년 1년간 발생한 범죄 건수를 기초로 분석해 보면 1달에 171,978건, 1일에 5,654건, 1시간에 236건이 발생한 셈이다. 1시간에 발생한 236건을 예로 든다면 최소한 1시간에 236명 이상의 피해자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왜냐하면 범죄가 1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경우라도 피해자는 1인 이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4) 경찰청, 2009 경찰백서, 93-96면; 이 통계를 기초로 살인범죄의 경우 2008년에 발생한 1,109건을 보면 범죄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한 1,109명 이상이고, 살인범죄의 사망자 가족이 3명 내지 5명이라고 가정할 때 살인범죄의 피해자(유족)는 3,327명 내지 5,545명이 된다. 이 범죄피해자들이 범죄 발생 후 처하게 되는 제반 환경에 따른 능력의 상실이나 감소는 수치로 산정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할 것이다.

25) 어떠한 사회제도이든 범죄발생이 필연적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피해자구제는 사회전체의 공동책임이어야 할뿐만 아니라 국가의 책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견지에서 범죄피해자는 범죄발생 후 단지 '수사에 있어서 협력자 내지는 참고인'으로서가 아니라 국가나 사회가 공동으로 구제하여야 할 존재로서 취급될 필요가 있다(도중진, 앞의 논문, 175면); 심연주, "범죄피해자 Care의 실제-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햇살'을 중심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Care, 한국피해자학회 2009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피해자학회, 2009, 40면.

26) 이러한 인식은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야기하는 피해가 다차원적인 것이라는 자각 하에 이러한 피해의 제거나 감축을 국가의 임무중의 하나로 삼아야 한다는 요청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변화된 국가임무를 바탕으로 하여 범죄에 대한 대응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 상황들의 해결을 형법목적적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Hassemmer, W./Reemtsma, J.PH., Verbrechenopfer, Gesetz und Gerechtigkeit, 2000, 136면).

제2절 헌법상의 근거

우리나라 현행 헌법은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과 ‘형사절차에서의 의견진술권’을 헌법상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범죄피해자를 위한 헌법 조문²⁷⁾은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헌법규정이다.²⁸⁾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며, 형사절차에서의 의견진술권을 규정한 헌법 제27조제5항은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한다.

1.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가. 규범적 의미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이란 본인에게 책임 없이 타인에 의한 범죄행위로 사망하거나 신체상 피해를 입은 국민 또는 그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²⁹⁾ 국가를 상대로 일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³⁰⁾이다.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은 범죄피해자가 처한 경제적·정신적·사회적 어려움을 제거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27) 오경식,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방안 연구, 법무부, 2007, 13면.

28) 1987년 개정헌법에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입법적으로 표출하였다(김현철, 앞의 논문, 61면).

29) 범죄자의 책임을 입증한다는 것이 범죄피해자로서는 곤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범죄자에게는 피해를 배상할 만한 자력이 없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범죄피해의 회복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이건호, 앞의 책, 24면).

30)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9, 586면; 이효원, 앞의 논문, 93면.

의료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신·심리적 지원과 법률구조 등을 내용으로 한다.³¹⁾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의 본질에 관하여 ‘국가가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할 책임이 있으므로 당연히 범죄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무과실배상책임이 있다’는 ① 국가책임설과 ‘국가가 범죄의 피해를 사회구성원에게 분담시키는 것’이라는 ② 사회부담설 그리고 ‘국가가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범죄의 피해를 구조해야 한다’는 ③ 사회보장설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에 대하여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의 본질을 국가책임과 사회보장(① + ③)으로 이해하고 그 법적 성격은 생존권적 성격을 띤 청구권으로 이해하고자 한다.³²⁾ 급속한 사회변화에 의한 범죄의 증가는 범죄피해자의 증가로 이어졌으나, 전통적인 사회연대가 붕괴됨으로써 가족이나 지역사회에서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거나 보호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나 사회는 육체적·정신적 상처와 경제적 곤궁을 겪는 피해자를 위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³³⁾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고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헌법은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는 의미는 단순 입법방침의 규정이 아니라 입법 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정

31) 이효원, 위의 논문, 82면.

32)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9, 787면; 헌법재판소도 “헌법은 ...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이와 같은 소극적 차원에서만 규정하지 아니하고 이에 더 나아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적극적인 구조행위까지 하도록 규정하여 피해자의 기본권을 생존권적 기본권의 차원으로 인정하였다”(헌법재판소 1989.4.17. 88헌마3)고 판단하고 있다(이효원, 위의 논문, 94면).

33) 이와 관련하여 선구적 활동을 전개한 사람은 영국의 여성 사회운동가 마저리 프라이(Margery Fry)이다. ... 중상해 피해자가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범인을 교도소에 수감하는 조치만으로 과연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및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를 유도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김용세·류병관, 앞의 논문, 140-141면).

한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³⁴⁾로서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를 법률로 입법화할 의무를 입법자에게 요구하는 것이다.³⁵⁾ 이 규정에 따라 1987년 11월 범죄피해자구조법이 제정되어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³⁶⁾

나. 주체

헌법상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의 주체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이다. 따라서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의 주체는 자연인에게만 인정되고, 단체나 법인은 주체가 될 수 없다.³⁷⁾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은 생존권적 청구권이므로 사회국가원리의 측면에서 그 주체, 요건, 내용과 범위 등에 대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³⁸⁾ 물론 국회가 헌법상 규정을 초과하는 내용의 법률을 규정한다면 그것이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한, 입법형성의 자유에 포함되어 헌법위반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34) 구체적으로 범죄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피해자가 위 법률에 따라서 구조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국가는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행하여야 할 입법적 형성의 의무를 기본적으로 이행한 것이며 따라서 그러한 한도에서는 국가에 의한 기본권침해가 주장될 여지는 없다고 하겠다(이건호, 앞의 책, 43면).

35) 이효원, 앞의 논문, 94-95면.

36)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는 범죄피해로 인하여 곤경에 처한 국민에 대하여 공동체가 부담하는 사회적 의무를 제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김용세, 피해자학, 형설출판사, 2009, 147-148면).

37) 범죄피해자구조법 제1조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상해를 당한 자”를 구조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3조 제1항은 “국가는 범죄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 피해자가 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범죄피해자구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보호영역은 범죄피해자구조법이 규정하는 위 주체와 “범죄피해”와 “중상해” 등의 개념규정을 통하여 구체화된다고 하겠다(이효원, 위의 논문, 95면).

38) 이는 국가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입법재량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그것이 헌법이 규정하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헌법상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포섭될 수가 없으므로 법률상 권리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이효원, 위의 논문, 95면).

2. 형사절차에서의 의견진술권

가. 규범적 의미

과거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는 무시되었다. 피해자는 실체법상·소송법상 불완전한 위치에 있었다.³⁹⁾ 형사절차는 범죄인을 체포하여 처벌함으로써 족한 것이었고, 피해자의 손실을 배상받거나 복수⁴⁰⁾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었다.⁴¹⁾ ‘형법은 범죄자를 위한 권리장전이다’라는 리스트(Franz von Liszt)의 말은 강력한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하여 형사재판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권리를 지키면서 범죄자에게 책임을 묻는 근대 형사재판제도의 기본적인 형태였고, 범죄피해자는 항상 ‘모기장의 바깥’에 놓여 있었다.⁴²⁾

또한 국가는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오히려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사실상 방해하기도 한다.⁴³⁾ 실제로 범죄피해자는 범죄행

39) 실체법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 유무, 인과관계, 객관적 귀속 등 여러 가지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범위를 한정하려 하고 있다. ... 또한 소송법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지위는 크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이찬엽, 앞의 논문, 173면).

40) 게르만의 형사법제도에서는 ‘피의 복수’(Blutrache)나 속죄금(compositio) 등의 제도가 있었으며, 피해자와 유족 외에 피해자에 속한 씨족(Sippe)에 대해 피해(손해)에 걸맞은 대가의 제공(회복)이 피해졌다(미야자와 고이치/장규원 역, 앞의 책, 29면); Ann Wolbert Burgess-Chery Regehr-Albert R. Roberts, 앞의 책, 35면).

41)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서 가해자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과학적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형사재판에 피해자가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었다(김용세·김재민, 앞의 책, 1면); 전통적인 형사사법체계에 있어서는 오로지 가해 범죄행위자, 즉 가해자의 체포·기소·처벌·교정처우 등만이 주된 논의대상이었기 때문에, 범죄피해자의 소송절차에의 적극적 참여는 소송수행의 장애요인으로 취급받는 형편이어서 범죄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고소인 또는 증인으로서의 형사절차의 변방을 떠도는 존재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송광섭,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지위 강화”, 피해자학연구 제8호, 한국피해자학회, 2000, 100-101면).

42) 형법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동의, 동의살인·촉탁살인, 동의낙태 등 몇 안 되는 규정 속에 피해자가 등장하고, 형사소송법의 규정에서는 피해자에 대해 참고인으로서 진술과 증언으로서 증언 그리고 감정할 때에 감정인으로서 사건 정황을 듣는 그들 속의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 주역은 항상 가해자인 범죄자였다(미야자와 고이치/장규원 역, 앞의 책, 30면).

위자체 뿐만 아니라 사건과 관련된 매스컴의 취재공세와 보도, 수사기관의 조사, 공판정에서의 증언, 시담교섭 등 변호사를 포함한 가해자 관계자와의 절충, 지역사회에서의 대인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정신적 피해를 받는 일이 적지 않다.⁴⁴⁾

1950년대 이후 피해자학⁴⁵⁾의 발전과 함께 범죄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지위⁴⁶⁾를 점하게 되었다. 사회관계가 극도로 복잡해지고 교통통신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범죄사건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포함한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가 불가결하게 되었다.⁴⁷⁾

범죄피해자가 갖는 형사절차에서의 의견진술권은 범죄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피해사실 내용의 진술과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이다.⁴⁸⁾

43) 따라서 피해자학은 피해자의 물질적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도 형사사법의 중요한 관심사로 취급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할 것이다(도중진, 앞의 논문, 174면).

44) 이러한 제2차적 또는 제3차적인 피해의 심각성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도중진, 위의 논문, 174면); 형사사법 과정에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는다는 문제는 피해자지원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등장하였다. 개인적인 명예와 관련된 피해자에게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특히 성적 피해자의 경우 그 피해 사실을 경찰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이유는 피해자가 참고인으로서 사실조사를 받을 때 이성(異性)인 남자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으며,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피해를 당한 진후의 상황에 대하여 말해야 하고, 더욱이 가해자와의 관계를 비롯하여 피해자 자신의 과거 인간관계, 교우관계, 성경험의 유무 등을 포함한 질문에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미야자와 고이치/장규원 역, 앞의 책, 23면).

45) 1956년 이스라엘의 변호사 멘델존이 '생물·심리·사회학의 새로운 분야: 피해자학(Une Nouvelle Branche de la Science Bio-psycho-sociale:Victimology)'의 글에서 처음으로 Victimology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를 일본에서는 1958년 동경의과치과대학 나카다 조교수가 '피해자학'(被害者學)이라 번역하여 소개하였다(미야자와 고이치/장규원 역, 앞의 책, 28면); 라틴어인 victima와 희랍어인 logos를 합성한 victimology이다(Benjamin Mendelsohn, "The origin of the doctrine of victimology", Victimology, edited by Paul Rock, Dartmouth, 1994, 6aus; 諸澤英道, 被害者學入門, 成文堂, 1992, 21-22면; 양문승, "우리나라 피해자학의 정상과학으로서의 모색", 피해자학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 137면).

46) Schafer(1968)에 의하면 범죄피해자의 지위는 3시기로 나뉜다. 제1기 : 피해자의 황금기, 제2기 : 피해자의 쇠퇴기, 제3기 : 피해자의 부흥기이다(長井 進, 앞의 책, 8면).

47) 김용세·김재민, 앞의 책, 2면.

48)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611면; 계획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7, 649면; 이효원, 앞의 논문, 88면.

형사절차에서의 의견진술권은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인 형사사법기관의 보호조치, 형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지위강화,⁴⁹⁾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⁵⁰⁾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⁵¹⁾

헌법 제30조가 규정하는 형사절차에서의 의견진술권은 본질적으로 보편성을 갖는 자연권은 아니며, 국가의 역사성과 특수성에 근거를 둔 헌법적 결단에 의하여 기본권에 포함시킨 헌법이 창설한 기본권이다. 따라서 형사피해자가 갖는 형사절차에서의 의견진술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⁵²⁾ 이 규정에 의하

49) 헌법상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진술권은 형사절차에서의 참여를 강화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보호관점을 구체화·실질화한 것으로서 의의를 갖는다(박미숙, “헌법상 범죄피해자 지원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0권 2호, 2002, 144면; 오경식, 앞의 논문, 13면).

50) 회복적 사법의 정의로 가장 널리 알려진 마아샬(Tony Marshall)은 회복적 사법에 관하여 “특정 범죄에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당사자가 그 범죄가 미친 영향 및 그 범죄가 장래에 대해 가지고 있는 함의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함께 모이는 절차”라고 한다(Marshall, T., "Criminal Mediation in Great Britain 1980-1996", *European Journal on Criminal Policy and Research*, 1996, 4(4), 37면); 회복적 사법이란 restorative justice를 번역한 용어로서 가해자, 피해자, 관련 가족들, 지역사회 관계자, 사법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가해자와 피해자간 화해와 조정을 통해 처벌적 방식이 아닌 문제의 원천을 해결하기 위한 평화적·타협적 방식에 의해 피해의 원상복구를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을 그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회복적 사법은 사법절차 안에서 피해자, 가해자, 지역사회를 최대한 포함시키도록 추구한다. 회복적 사법은 보상과 처벌에 근간을 둔 비교적 명확한 제재 방안을 제시한다. 회복적 사법은 다음 3가지 원리에 기반을 둔다. 첫째, 모든 부분(범죄자, 피해자, 지역사회)은 범죄의 대응방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와 지역사회의 역할은 보충성을 지닌다. 셋째, 책임은 가해자가 고통을 준 피해상황에 대해 이해하는데 기반을 둔다(양문승, “매 맞는 여성 신드롬(BWS)의 피해자화 이론과 회복적 사법”, 피해자학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3, 27면); 회복적 사법의 주요 목적은 범죄에 의해서 야기된 해(harm), 즉 심리적·신체적 상처, 물질적 손실, 관계에 대한 해가 복구된다는 의미의 회복(restoration)이다(김지선,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결과와 쟁점들”,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6, 25면); 회복적 사법이란 범죄과정에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화해와 조정을 통하여 범죄로 야기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John Braithwaite, "A Future Where Punishment Is Marginalized: Realistic or Utopian?", *UCLAL. Rew*(46), 1999, 1743면).

51) 이효원, 앞의 논문, 82면.

52) 이 규정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의하여 피해자가 재판정에서 진술할 기회가 박탈되는 것을 방지하여 형사사법의 적정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그 동안 단순히 심리의 대상에 그쳤던 형사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정종섭, 헌법연구 5, 박영사, 2005).

여 1987년 11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가 신설되었다.⁵³⁾

나. 주체

헌법은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에서의 의견진술권 주체에 관하여 ‘형사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제294조의2제1항⁵⁴⁾, 제294조의3제1항⁵⁵⁾ 등),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제294조의4제1항⁵⁶⁾)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1항 본문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개념 역시 앞서 본 헌법 제27조제5항의 취지에 맞추어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는 위 헌법 조항의 ‘형사피해자’의 개념과 동일한 뜻으로 풀이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일 것이다”⁵⁷⁾라고 판단하고 있다.⁵⁸⁾

797면); 헌법의 형사피해자의 재판진술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법률에 위임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구체화하고 있으므로 그 요건, 대상, 절차, 효과 등 규범적 의미는 헌법규정과 형사소송법을 동일적이고 조화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명확하게 도출될 수 있다.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의 보호영역은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 발현시기(공소제기를 전제로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함으로써 설정될 수 있다(이효원, 위의 논문, 89면); 김용세·김재민, 앞의 책, 34면.

53) 재판절차 진술권은 범죄피해자 등에 의한 사인소추가 허용되지 않고 형사소추권이 검사에 의해 독점되어 있는 현행법 아래에서 피해자에게도 당해 사건의 형사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형사사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여된 주관적 기본권이다(김용세, 위의 책, 148면).

54)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5)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6) 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 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57) 헌법재판소 1997.2.20. 96헌마76.

58)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형사소송법이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헌법에서 규정하는 “형사피해자”와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피해

형사실체법상 직접 보호법익의 주체로 인정되지 않는 자라도 범죄로 인하여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헌법이 인정하는 형사절차에서의 의견진술권의 주체로 인정될 수 있다.⁵⁹⁾

형사절차에서의 의견진술권은 적극적 권리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증인으로 진술하거나, 법원이 피해자를 신문하는 때에만 비로소 의견을 밝힐 기회가 부여될 뿐이다. 따라서 범죄피해자가 갖는 형사절차에서의 의견진술권을 증인신문절차에서 분리하고 양형절차에 참여시키는 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⁶⁰⁾도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 범죄피해자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 ‘형사절차의 당사

자”는 동일한 의미라고 해석하는 것이 체계정합적이라고 할 것이다(이효원, 앞의 논문, 89면).

- 59) 따라서 재판절차상 의견진술권의 주체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 자격을 가지며(헌법재판소 1992.2.25. 90헌마91.), 고소하지 아니한 범죄피해자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인정된다(헌법재판소 2004.11.25. 2004헌마595). 헌법재판소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부모도 해당 범죄로 인하여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어 헌법에서 인정하는 재판절차상 의견진술권의 주체로 인정된다고 보았다(헌법재판소 2009.2.26. 2005헌마764, 2008헌마118(병합)). 다만, 형사피해자는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되므로 기본권의 헌법적 요소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로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범죄로 인하여 사실상 불이익을 받는 자는 제외되고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만 포함될 것이므로 그 범위의 설정도 헌법적 요소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고 하겠다(이효원, 위의 논문, 90면).
- 60) 피해자가 증인의 자격으로 신문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자격으로 독립적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반드시 부여할 필요가 있다(김용세·김재민, 앞의 책, 34-35면); 피해자 진술권은 범죄로 인한 피해결과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보장하여 줌으로써 소송절차에 반영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통상의 증인신문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다. 즉 피해자가 증인으로 이미 신문받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의견진술의 기회는 보장되어야 하며, 수사절차에서 의견진술을 하였다고 하여도 다시 재판절차에서 의견진술을 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 오늘날 만연하고 있는 사법 불신의 해소와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서는 특정범죄에 한하여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배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검사가 공동으로 당사자적 지위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부대공소제도의 도입은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제도의 도입도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모순되어 어렵다면, 최근 일본에서 도입된 피해자참가인제도와 같이 소송절차에 보다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지위로서 참여하기 위하여 비록 형사소송의 당사자적 지위는 아니지만 공소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받을 방법, 또 피해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러한 절차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방법의 보장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박광민, “범죄피해자의 양형절차에의 참여”, 범죄피해자의 피해실태와 보호·지원정책, 제1회 형사사법포럼 자료집, 법무연수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53-55면); 이호중,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보호를 위한 개선방향”, 저스티스 제27권 제2호, 한국법학원, 1995, 257면; 전수영, 앞의 책, 105면.

자 또는 주체'로서 형사절차에 참가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가해자(피의자나 피고인)가 형사절차의 당사자 또는 주체로서 고유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범죄피해자도 같은 지위에서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⁶¹⁾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적극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피해자의 참여가 범죄해결을 통한 실체적 진실발견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해소를 위한 첩경이라는 관점에서도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⁶²⁾

제3절 범죄피해자보호관련 법률

1. 의의

범죄피해자를 위하여 제정된 법률은 크게 일반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법률과 특정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 구분된다. 범죄피해자보호법과 범죄피해자구조법 그리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은 일반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은 특정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61) 앞으로 우리 형사사법은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 할 것이며, 이를 구체화하는 제도들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조균석, “형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 참가제도의 도입 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10, 5면).

62) 범죄피해자에게 정당한 형사절차상의 지위를 인정해 주고 범죄자에 대한 정당한 형사제재를 판단하는 절차에 참여시킴으로써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범죄로 인하여 야기된 일반인의 법적 불안감을 안정시켜 침해된 법적 평화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전수영, 앞의 책, 106면).

또한 범죄피해자관련법률은 소관부서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① 법무부를 소관부서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범죄피해자구조법, ② 여성가족부를 소관부서로 하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여성발전기본법, ③ 국토해양부를 소관부서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④ 보건복지부를 소관부서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긴급복지지원법 등이 그것이다.

소관부서별 업무와 법적근거, 대상자, 주요지원, 예산 등을 보면 다음의 <표 1>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현황과 같다.

<표 1>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현황

소관 부서	업무	법적근거	대상자	주요지원	예산(2008년)
법무부	범죄피해구조금	범죄피해자구조법	고의 범죄로 인한 사망·중장해 피해자와 유족	· 구조금 · 사망(1,500-3,000만원) · 장해(600-3,000만원)	· 14억 1,100만원(국가 실지금액)
	범죄피해자지원센터 57개(법무부 등록 민간단체)	범죄피해자보호법	제한 없으나 주로 살인·강도·방화 등 강력사건 피해자와 가족	· 상담 · 생계비·의료비지원 · 신변보호, 범죄현장 정리	· 국가 12억원 · 지자체 40억원 · 기부금 등 자체 자금 29억원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471개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피해자	· 피해신고, 상담 · 보호시설, 법률구조연계	· 106억 6,700만원(지방비 포함, 국비보조율 50%)
	가정폭력·성폭력피해보호시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피해자	· 상담업무, 피해자 일시보호 · 신체적·정신적 안정 및 가정복귀 지원, 신변보호	· 53억 500만원(지방비 포함, 국비보조율 50-70%)
	원스톱지원센터(16개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피해자 · 가정폭력 피해자 · 성매매 피해자	· 상담지원 · 의료지원(외과·산부인과 등 치료, 응급키트 조치 등) · 수사·법률지원	· 25억 5,300만원(지방비 포함, 국비보조율 50-70%)
	해바라기아동센터(10개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피해자(13세 미만 아동 및 지적장애인)	· 전문피해상담 · 심리평가 및 의료지원 · 소송지원 · 가해아동 교정사업 등	· 68억 2,700만원(국비 100%)
	여성긴급전화 1366(16개소) * 긴급피난처 71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피해자 · 가정폭력 피해자 · 성매매 피해자	· 피해신고, 상담 · 상담소·보호시설, 법률·의료 구조 연계	· 31억 600만원(지방비 포함, 국비보조율 50%)
	의료지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관련 법률	성폭력 피해자 · 가정폭력 피해자	· (단, 300만원 초과시 심의)	· 13억 8,400만원(지방비 포함, 국비보조율 50%)

소관 부서	업무	법적근거	대상자	주요지원	예산(2008년)
여성 가족부	법률지원	· 여성발전기본법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성폭력 피해자 · 가정폭력 피해자	· 무료법률구조사업	· 15억 1,400만원(여성발전기금, 국비 100%)
	가정폭력·성폭력 피해회 발방지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성폭력 피해자 · 가정폭력 피해자 · 가정폭력 및 성폭력 가해자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직업훈련	· 67억 1,900만원(복권기금, 국비 50-70%)
국토 해양부	무보험·뺑소니 교통사고 피해 자 지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대한민국 거주 무보험·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	· 보상금 · 사망(최고 1억원) · 장해(최고 1억원) · 부상(최고 2천만원)	· 분담금 · 1,311억원(2008년 기준)
	자동차사고 피해 지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자동차 사고로 중증 후유장애(1-4급)인 사람 · 유자녀(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 · 피부양노부모(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장애를 입은 사람이 부양하던 65세 이상 노부모)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또는 가구당 평균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및 가구당 재산 수도 권 8,000만원(기타 7,400만원)이하인 사람	· 재활보조금 월 15만원 ·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월 20만원 · 비부양보조금 월 15만원	
보건 복지부	기초생활보장 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의료급여법	·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 · 성매매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시설 거주자를 위한 시설수급자 보호	· 시설생계급여 월 13만 3천원 · 의료급여 월 16만 6천원 · 교육급여 중고생 입학금·수업료 · 해산·장제급여 50만원	

소관 부서	업무	법적근거	대상자	주요지원	예산(2008년)
보건 복지부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 원법	· 위기상황으로 생 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최저생계비 150%이하, 생계 지원은 최저생계 비 이하) - 주소득자 사 망·가출 - 중한 질병 및 부상 - 가정폭력 등	· 생계지원 4인 90만원 · 주거지원 4인 32만원 · 교육지원(입학금·수업 료)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4인 100만원	· 긴급복지 전체 예산 375억원 (국비)
	위기가구 무한 돌봄(경기도 자체사업)	경기도 조 례	· 긴급복지 사유 포함, 최저생계 비 이하 120% 저소득가구	· 생계지원 4인 66만원	· (09년) 435억 원

2. 범죄피해자보호법 및 범죄피해자구조법

가. 제 · 개정과정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범죄피해자에 관한 제도마련에 발맞추어 1987년 헌법개정에서 범죄피해자를 위한 규정(제30조)을 신설하였다. 이 규정에 따라 1987년 11월 28일 법률 제3969호로 범죄피해자구조법(이하 ‘구조법’이라 함)이 제정되었다.

또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으며, 2004년에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⁶³⁾을 발표하였다.⁶⁴⁾ 그리고 2005년 11월

63) 이때부터 그동안 무계획적이고 산발적으로 전개되어왔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체계 성과 조직성을 갖추게 되었고(김성돈, 앞의 논문, 5면);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거듭 되어 왔고, 특히 2004년 일본의 범죄피해자등기본법의 입법 이후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2004년 9월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피해자의 권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정한 범죄피해자기본법을 마련하여 2005년부터 시행할 방침임을 밝혔고(황태정, 범죄피해자보호 관련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121면).

64) 이 대책의 추진배경은 일면 우리나라 형사사법기관이 범죄가 증가함으로써 국민의 형사사 법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이념과 시책을 규정하고 민간 차원의 범죄피해자 보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근거규정을 담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리고 2005년 12월 23일에 법률 제7731호로 범죄피해자보호와 지원에 대한 기본법인 범죄피해자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함)이 제정되었다.⁶⁵⁾ 이 법률은 ‘특정’범죄피해자가 아닌 ‘모든’범죄피해자의 권리장전이라고 할 수 있다.⁶⁶⁾

그 후 심재철 의원 등이 2008년 구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김동철·김성수·박선영·박민식 의원 등이 별도의 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리고 정진석 의원이 2008년에 박민식 의원이 2009년에 각각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2008년에는 정부가 보호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보호법 등 개정안이 총 8건이 되었다.⁶⁷⁾

2010년 4월 19일에 제289회 국회(임시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8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 이 의결에 따라 보호법의 전면개정이 이루어졌고 개정 전의 보호법과 구조법이 통합되어 범죄피해자보호법으로 개정되었다. 보호법 전부개정과

러한 정책이 갖는 효력은 범죄피해자에게 매우 유용하다고 보이므로 지속적인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김성돈, 앞의 논문 7-8면); 국가가 범죄피해자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신뢰를 잃게 되면 그 여파는 잠재적 피해자에게까지 확대되어 종국적으로 국가 정당성에 대한 의문으로까지 이어진다. ... “사법 당국과의 부정적인 경험은 피해자가 당국과의 협조를 점점 피하게 되고 당국에 대한 지원 및 법에 대한 존중의 감소로 이어진다. 이러한 현실은 범죄피해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변화를 촉발하게 하였다”(Wemmers, J., *Victim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msterdam: Kugler, 1996, 215면).

65) 이효원, 앞의 논문, 82면; 김현철, 앞의 논문, 61면.

66) 김성돈, 앞의 논문, 5면.

67) 이러한 범죄피해자관련법의 발의에 관하여 2010년 4월 14일에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8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하였다.

관련한 발의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개정 관련 발의내용과 같다.

<표 2>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개정관련 발의내용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회부일	상정일	소위심사
범죄피해자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80375호)	심재철의원 등 22명	'08.7.23	'08.8.29	'08.11.20	'08.11.27, '09.4.15, '10.4.5, '10.4.14
범죄피해자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83866호)	김동철의원 등 13명	'09.2.17	'09.2.18	'09.4.13	'09.4.15, '09.4.15, '10.4.5, '10.4.14
범죄피해자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85982호)	김성수의원 등 14명	'09.9.10	'09.9.11	'09.11.18	'10.4.5, '10.4.14
범죄피해자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86133호)	박선영의원 등 15명	'09.9.25	'09.9.28	'09.11.18	'10.4.5, '10.4.14
범죄피해자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86992호)	박민식의원 등 11명	'09.12.14	'09.12.15	소위 바로회부	'10.4.5, '10.4.14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82488호)	정진석의원 등 18명	'08.11.28	'09.9.22	'09.11.18	'10.4.5, '10.4.14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80375호)	박민식의원 등 10명	'09.12.15	'09.12.16	소위 바로회부	'10.4.5, '10.4.14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제182357호)	정부	'08.11.28	'08.12.1	'09.2.24	'09.2.25, '09.2.26, '09.4.15, '10.4.5, '10.4.14

나. 범죄피해자보호법

보호법은 본문 5장(제27조)⁶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보호법을 제정한 이유는 “헌법 제30조에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하여 국가의 구조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재판·행형상의 인권 개선 폭과 비교하여 범죄피해자의 인권개선은 여전히 부진한 실정이므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

68) 제1장 총칙, 제2장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의 기본 시책, 제3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계획 등, 제4장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제5장 벌칙

의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활동을 촉진하는 등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이었다.

주요내용은 ① 범죄피해자보호에 관한 기본이념(제2조), ②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기본시책(제4조·제5조 및 제7조 내지 제11조), ③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12조 및 제13조), ④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제15조), ⑤ 범죄피해자지원법인에 대한 보조금 교부(제17조) 등이었다.

다. 범죄피해자구조법

구조법은 본문 제1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구조법을 제정한 이유는 “강력범죄로 인한 피해가 점차 심각해지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체계하에서는 그 피해자가 가장 소중한 생명·신체상의 위해를 당하더라도 가해자가 불명이거나 무자력인 경우에는 아무런 금전적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인 바, 국가가 이러한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민법상 불법행위제도의 결함을 보완하고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재산이 없는 범죄자에게 피해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다고 볼 때, 범죄자의 처벌은 범죄에 대한 준엄한 형벌이 피해자의 응보감정을 만족시키는 이외의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었다.⁶⁹⁾ 이러한 관점에서 구조법의 제정은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서 불가결한 것이었다.

구조법은 1990년 12월 31일 제1차 개정,⁷⁰⁾ 2005년 12월 29일 제2

69)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벌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피해자와는 무관한 것이었다(미야자와 고이치/장규원 역, 앞의 책, 30면).

70) 개정이유는 “범죄척결에 국민이 안심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범죄수사 또는 형사재판절차에 있어서 고소·고발이나 증언 등을 하겠다는 이유로 보복범죄를 당한 경우 그 피해의 구

차 개정⁷¹⁾이 있었고, 2010년 5월 14일 폐지되면서, 구조법의 내용은 (신)범죄피해자보호법에 흡수되었다. 폐지되기 전의 구조법의 개정과정은 주로 범죄피해자를 위한 구조요건을 완화하고 구조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이었다.

라. (신)범죄피해자 보호법

1) 개정이유

보호법과 구조법을 통합하여 2010년 5월 14일 법률 제10283호로 개정된 (신)범죄피해자보호법(이하 ‘신보호법’이라 함)은 2010년 8월 15일 시행된다. 신보호법은 본문 제7장(제50조)⁷²⁾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보호법의 개정이유는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제도와 범죄피해자를 구조하는 제도는 정책 방향이 같으므로 범죄피해자구조법을 이 법에 통합하고, 구조의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의 범위를 중대 중장해에서 장해 및 중상해까지 확대하고 구조금의 지급요건에서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 부분을 삭제하여 범죄피해자 구조의 범위를 확대하며,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국가가 일시적 보호시설 및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구조금 지급 제한 사유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구조금액을 월급여·월실수입액 또는 평균

조요건을 일반범죄의 피해구조요건보다 완화하여,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 피해자의 생계곤란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71) 개정이유는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구조를 명시하고 있으나, 엄격한 구조요건 때문에 혜택을 받는 대상자의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구조요건을 완화하고 구조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72) 제1장 총칙, 제2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제3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계획 등, 제4장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 제5장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제6장 형사조정, 제7장 벌칙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비하고, 구조금 지급신청의 기한을 민법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연장하며, 구조금 지급신청의 기각이나 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마련하고, 형사조정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신보호법의 주요내용은 ① 구조 대상 범죄피해의 범위 확대(제3조제4호), ②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 제공, 사회복귀를 위한 일시적 보호시설을 설치, 상담·치료 프로그램의 운영(제7조), ③ 범죄피해자 구조범위의 확대(제16조제1항1호), ④ 구조금 지급 제한 사유 법률규정(제19조), ⑤ 구조금액의 확대(제22조), ⑥ 구조금 지급신청 기한의 연장(제25조제2항), ⑦ 구조금 지급신청 기각·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마련(제24조 및 제27조), ⑧ 형사조정⁷³⁾ 제도의 신설(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등이다.

3.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가. 목적 및 제정의 의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하 ‘기금법’이라 함)⁷⁴⁾은 2010년 5월 14일

73) 피해자, 가해자 조정은 회복적 사법에 있어서 가장 흔한 형태이다.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는 일차적으로 배상계획을 세우기 위해 조정자들과 만난다. 그러나 종종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부차적이고, 감정적인 치유가 주가 된다. 피해자들은 일관되게 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들의 감정을 표현하고 가해자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하고, 가해자들도 배상에 대한 합의보다는 사건의 배경을 설명할 기회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박상식, “회복적 사법 실천모델의 효과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6, 48면).

74) 박민식의원이 2009년 대표발의(여야 103명 의원이 서명)하여 제정되었다.

법률 제10284호로 제정되었고, 2011년 1월 1일 시행예정이다. 이 법률에 의한 업무는 법무부(구조지원과)의 소관으로 하고 있다.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제1조)하는 기금법은 본문 15조⁷⁵⁾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범죄피해자를 위한 기금의 설치에 관하여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위한 전제로서 많은 연구에서 제시되었다.⁷⁶⁾ 범죄피해자에 관한 연구와 제도가 이미 상당정도 진행된 선진 국가⁷⁷⁾에 관한 연구에서 범죄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기금의 효과는 이미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금법의 제정은 형식적인 지원에서 머물던 국가의 관심이 실질적인 지원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이는 바람직한 변화라 할 수 있다.

나. 기금의 조성 및 관리

기금법은 기금의 조성에 관하여 제4조에서 ① 벌금 수납액, ② (신)보

75)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금의 설치), 제4조(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기금의 용도), 제7조(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제8조(기금계정의 설치),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제10조(기금의 회계연도), 제11조(기금의 회계처리), 제12조(기금의 일시차입), 제13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제14조(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제15조(감독)

76) 현행 범죄피해자구조제도는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서 범죄피해자를 위한 본격적인 지원제도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지급 등을 위해서 우선 충분한 재정적인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이나 일본의 입법례에서 보듯이 국가적인 재정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이들 국가들은 범죄피해자를 위한 기금을 설치함으로써 해결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범죄자가 납부한 벌금이나 몰수된 범죄자재산을 그 재원으로 하는 범죄피해자기금의 설치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이건호, 앞의 책, 237면).

77) 범죄피해자를 위한 전면적인 지원 및 보상 제도를 갖춘 다른 외국의 예들을 살펴보면 이들 국가들 중 몇몇은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기금들을 설립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의 범죄피해구원기금, 미국의 연방법률에 의한 연방범죄피해자기금(Crime Victims Fund), 네덜란드의 범죄피해보상기금(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Fund)이 그것이다(이건호, 위의 책, 224-225면).

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 ③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④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벌금 수납액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4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⁷⁸⁾을 정부가 기금에 납입하도록(제4조제2항) 하고 있다.

기금은 법무부장관이 관리·운용하며(제5조제1항), 기금의 용도(제6조)로는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1호), 보조금의 지급(2호), 다른 법률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3호),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경비의 지출(4호),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5호) 등이다.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⁷⁹⁾를 두며(제7조), 지원받은 기금은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제14조).⁸⁰⁾

4. 기타 범죄피해자관련법률

78) 법무부가 연간 거둬들이는 벌금이 약 1조 5,000억 원이므로 4%에 해당하는 금액은 60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79) 심의회 위원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공무원을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을 포함한 심의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2항).

80) 범죄피해자구조제도를 위한 재정적인 확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통해서 보상되는 범죄피해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영국이나 네덜란드, 스위스 등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범죄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구조금지급의 원칙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구체적으로 범죄로 인한 신체상해의 발생시에 그에 대한 치료비 및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분에 대한 보상이 구조금에 의한 지원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범죄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 대해서도 생계비 상실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이건호, 앞의 책, 237-238면).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981년 1월 29일 법률 제3361호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되어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법은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제25조부터 제36조에게 배상명령제도를 두었다.

배상명령은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형법에 규정된 범죄 중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및 ② 위 범죄 및 기타 범죄에 대한 사건에서 합의된 손해배상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가 있다. 형사소송에서의 증명을 통하여 별도의 민사소송에 의한 증명활동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문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상명령제도는 신속한 피해자구조에 기여한다. 다만 민사상 쟁점 때문에 형사재판이 지연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소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이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신청을 각하하도록 함으로써,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하더라도 실제로 배상명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함)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것⁸¹⁾을 그 입법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조치를 취할 책

81) 매 맞는 여성과 그 가족 구성원들은 심리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는다. 가출과 같은 물리적 현상은 차치하더라도 감정적 요인에 의해 일어나는 신체적 질병을 겪는 경우도 허다하며, 스트레스나 노이로제 등의 심인성 질병을 앓기도 한다(양문승, 앞의 논문, 43면).

무를 부과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를 위한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제5조) 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도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학교법인, 법률구조법인,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도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에 관한 필요한 사항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다. 법률구조법

법률구조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구조업무를 하려는 목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등록된 법인과 이 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⁸²⁾이 이 법에 따른 법률구조업무를 행하고 있다(법은 이 양자를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 정부는 이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법률구조법인이 하는 ‘법률구조’란 무료법률상담, 저소득층을 위한 소송대리, 형사변호 지원 등의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⁸³⁾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구조는

82) 1987년 9월 1일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10년 5월 1일 현재 직원 수는 712명이며 3부(구조정책부·행정관리부·재정교육부) 3실(비서실·홍보실·감사실) 8팀(발전기획팀·구조관리팀·인사운영팀·관리지원팀·재무회계팀·예산정책팀·법문화교육팀·경영정보팀)으로 구성된 본부와 18개 지부 39개 출장소 15개 지소로 구성되어 있다.

83) 1. 법률상담 : 공단은 모든 사람들에게 민사·형사·행정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① 공단사무실을 방문한 경우에는 면접법률상담, ② 132번에 의한 전화법률상담, ③ 홈페이지(<http://www.klac.or.kr>)를 통한 사이버 법률상담 등) 하고 있다.
2. 합의중재 :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원만한 합의를 권유함으로써 불필요한 소

포함되어 있지 않다. 법률구조법인은 법무부장관이 감독관청이다.

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이라 함)은 위계·위력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등을 성매매피해자로 정의하고 성매매방지법은 이러한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 법은 이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이나 성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이나 성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국가는 성매매방지 중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고, 해외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법은 위와 같은 시설 기타 이 법에 정한 업무를 여성가족부의 관장사항으로 하고 있다.

송을 예방하고 있다.

3. 소송서류의 무료작성 : 소송하고자 하는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이고, 차용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은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소송서류를 무료로 작성하여 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소송 진행에 대해 계속적인 조언을 하여 줌으로써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민사·가사 사건 등의 소송대리 : 법률상담을 한 사안 중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공단소속 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5. 형사사건의 무료변호 : 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 재심 사건에 관하여 무료로 변호를 하고 있다(다만 보석보증금이나 보험증권발급수수료 등은 본인 부담).
6. 기타 : 법률 강연과 출장상담 등을 통한 준법계몽활동과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도 하고 있다.

마.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94년 1월 5일 법률 제4702호로 제정되고 1994년 4월 1일 시행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라 함)은 “각종 성폭력범죄가 점차 흉포화·집단화·지능화·저연령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범죄가 빈발하여 기존의 법체계로는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 또는 강화하고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수사·재판 등 사법처리절차에 있어서 특례를 인정하도록 하며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특히 여성과 미성년자를 성폭력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었다.⁸⁴⁾

2)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에서 성폭력에 의한 피해자에 관한 사회적 관심은 성폭력특별법의 시행을 계기로 본격화 된 이후 성폭력에 관한 연구와 제도적 지원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 특히 성폭력 가해자 처벌에 관한 법적인 처리와 피해자에 대한 법적인 지원과 상담 및 의료지원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84) 주요 내용은 ① 존속 등 연장의 친족에 의해 강간·추행과 신체장애자에 대한 추행을 처벌하도록 하고 이를 모두 비친고죄로 함, ②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와 버스·지하철·극장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처벌하도록 하고 이를 친고죄로 함, ③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할 때에는 일정기간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폭력범죄를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대상범죄로 보도록 함, ④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함, ⑤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등이었다.

체계는 비교적 잘 정비되어 왔다. 그러나 강간⁸⁵⁾ 발생건수는 1999년 6,359건(검거 6,164건)에서 2008년에는 9,883건(검거 8,854건)으로 증가하였다.⁸⁶⁾ 이러한 실정을 반영하듯이 늘어가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적절한 치유를 위한 사회적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피해자의 상처치유에 관한 개입의 적절성에 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⁸⁷⁾

성폭력특별법은 14차례의 개정을 거쳐 2010년 4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0258호)의 제정⁸⁸⁾과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었다.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 제정 이유

85) 강간은 피해여성들에게 가혹한 상처를 안겨주는 가장 심각한 형태의 성폭행에 해당한다. 피해사실에 대해 드러내기를 꺼릴 수밖에 없는 한국의 문화적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가혹한 상처의 고통을 개인적으로 감당하려하는 까닭에, 회복을 위한 신속하고 적절한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한 것이 현실이다. 강간으로 인한 심리적 및 신체적인 피해는 상처의 치유를 위한 즉각적인 지원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피해여성들은 그들의 전 생애 동안, 그리고 생활전반에 걸쳐 그 충격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전문적인 개입이 중요하다(신연희·채규만, “강간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과 치유 프로그램의 방향”, 피해자학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10, 107면).

86) 경찰청, 2009 경찰백서, 98면.

87) 신연희·채규만, 앞의 논문, 107-108면.

8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이유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각 사항에 대한 효율적 대처에 한계가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이 법을 제정함. 최근 성폭력범죄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날로 흉포화하고 있으며,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가능성이 높고 은밀하게 행해지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범방지 등을 위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므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형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하고,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등록·공개하도록 하는 등 성범죄자의 처벌 강화와 재범방지 등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었다.

성폭력범죄의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2011년 1월 1일에 시행될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로 대체될 예정이다.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제정이유는 “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내용 중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성폭력피해자 등에 대한 취학 지원,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성폭력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등을 규정하여 성폭력 방지 및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이다.

나) 주요 내용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국가 등의 책무(제3조제1항)를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 방지와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성폭력의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관련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둘째, 성폭력피해자 등의 취학 지원(제7조)이다. 종전에는 성폭력피해자나 성폭력피해자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취학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어 성폭력피해 학생이 전학 등을 원할 경우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점 있었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나 성폭력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인 경우로서 주소지 외의 지역으로 전학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셋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입소 및 퇴소(제15조 및 제17조)를 규

정하고 있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사항은 중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여성가족부령에 규정되어 있어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었다. 성폭력피해자 중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능력이 불완전하여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 또는 친족에 의한 피해자나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한 경우에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하는 한편, 본인의 의사 또는 입소에 동의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시설을 퇴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등에는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법률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입소·퇴소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의 인권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제18조)을 규정하였다. 현재 설치·운영 중인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와 아동성폭력전담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이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제19조)을 규정하였다.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 또는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중 일반적인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이 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 또는 상담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다.⁸⁹⁾

다섯째, 상담소·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평가(제25조)를 명문화하였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상담소·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고, 시설의 감독, 지원 등에 그 결과를 고려하도록 규정하였다.

바.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 정의하고 특히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그 외의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 국가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가정위탁 지원센터를 두며,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위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반드시 범죄의 피해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도 적용대상이 되는데 이 경우 아동은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일 수 있다. 위 시설 등 및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아동

89)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 또는 상담원의 결격사유 등 기본적인 자격기준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종사하려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자격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복지과) 소관이다.

아동이 학대를 당한 후에 3차 피해자화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새로운 피해자는 아동을 학대했던 가해자(친부모 등)가 된다.⁹⁰⁾ 즉 약자이던 피해자가 강자가 되면서 보복의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이지 않은 처벌로 아이들은 부모의 통제에 따르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아동학대의 가해자 유형에 대한 오해⁹¹⁾도 생기는 경우가 있다.

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4295호로 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검사로 하여금 특정강력범죄⁹²⁾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기타의

90) 부모가 아동학대를 했다손 치더라도 자식이 성인이 되었다면 그는 부모를 살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성인은 부모 곁을 떠나 가출함으로써 자신의 환경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직 미성년자만이 부모의 아동학대를 피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동학대를 당하고 후에 멀쩡한 정신으로 부모에게 보복하는 친부모살해를 범한다(이훈구, “존속살해사건의 심리학적 조명-이은석 사건을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3, 13면).

91) 신체적 학대의 가해자의 대부분이 아버지이고, 어머니는 방관적인 입장을 보이는 양상이 일반적이라고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심각한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어머니라고 나타나고 있다. 부모의 인식이 낮을수록 학대가 심할 것이라고 여겨졌으나, 실제 조사에서는 5%에 불과하였고, 10% 정도의 부모들은 불안한 심리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 아동 학대를 하는 부모들이 그들의 유년시절에 부모에게서의 애정 결핍, 감정 표현의 실패, 아동 성장기에 필요한 요소들의 왜곡과 같은 정서적 장애를 겪었던 경우가 많았던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어머니들이 때때로 아이들의 정서적 욕구들을 만족시켜 주는데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한 스트레스의 해소가 미처 준비되지 않은 상태일 때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낸다. 대부분의 아동 학대 부모들은 이상한 사고방식, 적합하지 않은 기대감 및 자녀 양육 방법들을 보인다는 것이다(양문승, 앞의 논문, 34면).

92)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존속살해], 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및 제254조(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유인),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유인·매매등), 제289조(국외이송을 위한 약취·유인·매매), 제293조(상습범) 및 제294조(미수범. 다만, 제291조 및 제29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검사의 직무이므로 법무부 소관이다.⁹³⁾

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1) 목적

1999년 8월 31일 법률 제5997호로 제정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은 “특정범죄⁹⁴⁾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 범죄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함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한다.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및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5.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치상), 제338조(강도살인·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 제341조(상습범) 및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등의 구성·활동)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8(단체 등의 조직)의 죄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죄는 특정강력범죄로 본다.

- 93) 이상원, “범죄피해자기금의 설립 및 운용방안”, 범죄피해자와 인권(2008년 법무부 용역연구), 법무부 인권국, 2008, 7면.
- 94) 1. "특정범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가.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범죄
 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2조제2항의 범죄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8의 단체의 구성원의 동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범죄
 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의 죄
- 95)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은 법안의 제목에서 보듯이 특정범죄의 피해자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강화를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완전한 범죄피해자보호규정의 역할을 행할 수는 없다(오경식, 앞의 논문, 13면 각주 3)).

2) 주요 내용

이 법은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에서의 참여강화 내지 방어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증인의 신문을 영상물로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제10조), 비공개로 재판을 하도록 하거나 법정 이외에서의 증인신문 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1조).

이 법 제13조에 의하면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당해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조치(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항). 재판장 또는 판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진행과정에서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제2항). 범죄 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 등은 재판장·검사 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제3항). 경찰서장이 신변안전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제4항), 신변안전조치의 종류⁹⁶⁾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항).

또한 이 법 제14조는 ‘범죄신고자등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범죄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로 인하여 중대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이사·전직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범죄 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 등의 신청

96) 시행령 제7조 (신변안전조치의 종류) 1. 일정기간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 4.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5.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에 의하여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1항). 구조금의 금액은 보복의 위험성, 지급대상자의 직업·신분·생활수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 지출비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 안에서 결정한다(제2항).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에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함)를 두며(제3항), 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제4항). 심의회는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청인 기타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행정기관 또는 공·사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알아볼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 및 공·사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5항). 이 법은 법무부 소관이다.

제3장 범죄피해자지원기관과 개선방안

제1절 의의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말까지도 범죄피해자 문제의 사회적 중요성이 전혀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에⁹⁷⁾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지원기관은 주로 1990년 이후의 일로 이해할 수 있다. 피해자의 권익 옹호에 관한 초기의 연구는 대부분 사회에서의 상대적 약자로 볼 수 있는 여성과 어린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위한 운동도 주로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⁹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는 모든 범죄에 대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와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로 구분된다.⁹⁹⁾

1991년 4월에 설립된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간조직의 효시라고 할 수 있으며,¹⁰⁰⁾ 그 후 ‘여성의 전화’, ‘여성의 집’,

97) 김용세, 앞의 책, 425-426면.

98) 최근에는 북미와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조차 각종 피해자단체가 사회적 압력단체로 부각될 정도로 피해자운동이 확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들은 경찰을 비롯한 국가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피해자 지원 활동을 체계화하는 한편, 형사정책 입안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요구하기도 한다(김용세·류병관, 앞의 논문, 141면); 오경식, 앞의 논문, 14면.

99) 일반범죄피해자 지원제도는 2003년 구미·김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시작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과 경찰단계에서의 범죄피해자 서포터제도·케어팀 제도의 운영으로 이해되고, 특정범죄피해자 지원제도는 원스탑(One-Stop) 지원센터·여성긴급전화 1366·117 학교여성폭력긴급지원센터(117 여성아동청소년 경찰지원센터)·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으로 이해할 수 있다(박광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실태와 연계강화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7권 제1호, 2009, 6-14면).

100) 자발적으로 형성되거나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위탁이나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면서 형성되었던 대부분의 기존 민간단체들은 주로 여성(성폭력 및 가정폭력), 아동(아동학대 및

‘사랑의 전화’, ‘해바라기아동센터’ 등이 여성과 청소년 또는 노인의 권익 옹호를 위한 조직으로 개설되었다.¹⁰¹⁾

2000년대 들어와서 범죄피해자 일반에 대한 지원과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법무부와 검찰청을 중심으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됨으로써 점진적이면서 전국적인 피해자지원조직이 형성되고 있다.¹⁰²⁾

제2절 범죄피해자지원기관

1. 일반범죄피해자지원기관

가. 설립과정

우리나라에서의 특정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단체가 이미 활동하고 있었으나, 특정범죄에 치우치지 않고 전반적인 범죄에 대한 체계적 지원

성학대), 노인(노인학대) 등 특정 대상을 서비스의 목표대상으로 삼고 있었을 뿐 일반적인 범죄의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단체는 하나도 없었고, 이러한 단체의 활동도 주로 상담에 의존해 온 한계가 있었다(김지선·이동원, 앞의 책, 105면); 윤상민,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성폭력상담소의 지원을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6, 381면.

101) 이 단체들은 대부분 여성 또는 청소년(아동)에 대한 일반적 보호를 표방한 단체로서 범죄 피해(피해소년 또는 피해여성) 보호는 단지 부수적인 활동목표에 불과하다. 게다가, 피해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이나 조직체계를 갖추지도 못한 실정이다. 대체로 여권운동 또는 청소년보호운동의 일환으로 피해자에 대한 전화상담, 피난처 제공 또는 법률적 조언을 겸하고 있을 뿐이었다(김용세, 위의 책, 426면).

102) 2003년 9월에는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의 후원으로 구미·김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2004년에는 법무부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55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 관할구역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하는 작업에 착수하여, 2006년 6월 영덕·울진·영양 지역을 끝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설립작업이 완료되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피해자지원법인으로 등록할 경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다(김용세, 위의 책, 427면).

이 가능한 민간단체¹⁰³⁾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었고,¹⁰⁴⁾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설립된 민간단체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다.¹⁰⁵⁾ 2010년 현재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58개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부록 3.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명칭 및 소재지 참조).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에서의 방화사건으로 192명이 사망하고 147명이 다쳤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¹⁰⁶⁾ 2003년 9월 김천·구미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처음으로 범죄피해자 일반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기 시작하였는데¹⁰⁷⁾ 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김천지청의 후원을 받아¹⁰⁸⁾ 설립된 비영리 민간공익단체이다.¹⁰⁹⁾¹¹⁰⁾ 이에 비하여 동년 11월 23일에 설립된

103) 시민사회의 성숙과 함께 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으나, 민간단체에 대한 확립된 개념은 없다. 보통 민간단체란 이윤을 추구하거나 배분하지 않는 민간비영리조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며, 정부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서 비정부단체(non-government organization, NGO)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서 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 NPO)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외에도 자원부문(voluntary sector), 제3섹터(third sector), 결사체부문(association sector), 독립부문(independent sector)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김지선·이동원, 앞의 책, 39면); 유럽 및 미국 등에서는 범죄, 특히 흉악범죄조직폭력범죄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 사이에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클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민간인의 주도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조직화가 추진되었다. 미국·캐나다 등 영미 국가를 비롯하여 유럽 국가의 많은 도시에 각종 피해자지원센터, 강간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되었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신적·심리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원조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미야자와 고이치/장규원 역, 앞의 책, 22-23면).

104) 안희준, "한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동향과 발전방향", 피해자학연구 제17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9, 68면.

105) 최근 범죄문제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국가역할의 한계가 지적되는 반면,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 시민조직의 영향력은 범죄피해자 문제의 개선에도 관심을 나타내고 있을뿐더러, 경찰조직의 개혁운동과 맞물려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윤희중, 앞의 논문, 189-190면).

106) 안희준, 위의 논문, 68면.

107) 김지선·이동원, 앞의 책, 25면.

108)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과 김천·구미의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민간차원에서라도 체계적으로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조직을 만들기로 결의하면서 민간피해자단체가 최초로 설립되었다. 설립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검찰의 후원이 있었지만, 검찰과는 업무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지청장이 고문으로 지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사무실을 시청 복지회관에 두는 등 민간주도로 진행되었다(김지선·이동원, 위의 책, 106면).

109) 김용세, 위의 책, 434면; 대전센터는 검찰과 범죄예방위원 지역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설

대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대전지검의 지도하에 설립되었고, 그 운영에 관하여는 범죄예방위원협의회가 실질적인 주도권을 행사하였다.

김천·구미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상담보다는 법정동행, 의료지원 등과 같은 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에 중점을 두으로써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와 같은 기존 단체와 차별화를 시도하였고, 자원봉사자의 확보, 전문가 양성, 재원 확충 등 노력을 병행하였으며, 운영을 독자적으로 하였다.¹¹¹⁾

2008년 9월 3일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피해자지원을 위하여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함)를 창설하였다.¹¹²⁾

연합회는 ① 전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통합업무 수행, ② 피해자 등의 지원에 관한 공공정책 및 입법운동, ③ 전문상담원의 양성을 위한 연수 및 교육, ④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활동, ⑤ 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소 등 운영, ⑥ 피해자 지원 및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⑦ 성폭력·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관련 단체와의 연계 및 지원활동, ⑧ 피해자 등의 자조조직에 대한 지원 활동, ⑨ 기타 피해자 등의 지원에 관련된 사항 등 다양한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사)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정관 제2조 및 제4조).¹¹³⁾

립되었으며 사무실도 검찰청 내에 두고 있다. 사무국장은 범죄예방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겸직하게 되었으며, 상당수 범죄예방위원들이 각종 위원회의 주축을 이루게 되었고, 운영위원회에 차장검사, 부장, 소년검사 등이 참여하여 지도·감독을 하는 체제로 구성되었다(김지선·이동원, 위의 책 106면).

110) 센터가 초기에 순수하게 자생적인 민간단체로 출범하지 않았지만 관변단체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법무부나 검찰은 센터의 활동에 가급적 개입을 자제함으로써 센터는 초기부터 상부(법무부 등)에서 하달되는 어떤 표준화된 지침이나 체계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피해자지원활동을 수행하기 보다는 센터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서 지원활동을 수행해 왔다(이동원,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전망-피해자지원센터 근무자의 평가를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10, 53면).

111) 안희준, 앞의 논문, 68면.

112) 안희준, 위의 논문, 69면.

113) 현재 연합회의 사무소는 대검찰청사 내에 두고 있으며, 연합회의 조직은 회장을 비롯한 이사, 감사 등의 임원과 연합회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피해자지원위원회·국제교류위원회·제도개선위원회·교육위원회·홍보위원회 등 6개 분과위원회, 그리고 법인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법인의

이러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에는 나름대로 상당한 규모의 인원이 구성되어야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문제점¹¹⁴⁾은 연합회가 아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또한 연합회가 범죄피해자지원 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인적·물적 지원의 확대나 센터 간에 연계를 통한 효과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방안의 제시 등이 없이 단순히 센터의 상부기관으로 존재하게 된다면 새로운 문제로 등장할 수 있음도 경계해야 한다.¹¹⁵⁾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한계¹¹⁶⁾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 조직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대체로 이사장(위원장 또는 본부장의 명칭으로

회원으로 구성된 총회 및 회장과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돕는 등 연합회 사업 달성을 위한 자원봉사조직을 두고 있다(이동원, 앞의 논문, 31-33면).

- 114) 사실 전국 연합회라는 조직체를 구성하였지만 좁은 사무실에 상근 직원 2명이라는 인력으로 지금까지 산적한 센터의 과제들을 일시에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이동원, 위의 논문, 54면).
- 115) 센터의 입장에서 연합회가 단순히 센터의 상부기관으로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감독하는 기관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는 자칫 법무부 등의 관련부처 대리기구로 전락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이기도 하다. 물론 관련부처와의 교량 역할은 중요하고 필요하다 하겠지만, 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 연구 개발하는 역할과 센터의 의견수렴을 강화하면서 관리 역할을 일정부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이동원, 위의 논문, 54면).
- 116) 1) 범죄피해자와 주로 접하게 되는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은 범죄의 수사과 기소, 공판의 유지를 담당하며, 이들에게는 범죄인의 체포와 범죄의 입증에 무엇보다 우선되는 법적 의무일 뿐,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다만 부차적인 것이다. ... 2) 형사사법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형사사법기관에 피해를 통보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비스의 공급범위가 제한적 ... 3) 또한 국가에 대한 일반적인 불신이나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이들 기관에 접촉하는 것을 꺼리는 피해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자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 4) 일련의 절차를 거쳐 형사사법기관을 떠난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계속하기가 쉽지 않고, 이에 따라 장기간에 걸친 지원이 가능하지 않다. ... 5) 국가기관에서 제공하는 피해자지원 서비스는 재정 및 인력의 한계와 관료제의 비효율성의 문제로 인해 서비스의 종류가 한정적이고, 서비스의 질이 낮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김지선·이동원, 앞의 책, 44-45면).

도 사용됨), 고문, 감사, 이사 등의 임원과 운영위원회, 사무처 등을 두고 있다. 분과별 전문가그룹인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곳도 있다. 이사장은 대체로 기업인이나 의사 등이 맡고 있다. 그 이유는 설립 당초부터 금전적 후원이 가능한 인사를 택하였기 때문이다.¹¹⁷⁾

위원회는 지역별로 다양하다. 대체로 총괄위원회, 상담위원회, 의료지원위원회, 화해중재위원회, 사법보좌인위원회, 집단피해자지원위원회, 교육 및 신변보호위원회 등을 두고 있다.¹¹⁸⁾

사무처(국)에는 상근직원들이 있다. 상근직원은 통상적인 상담, 피해자 지원업무, 대내외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처(국)장과 간사로 구성된다. 실제 사무국 직원들이 피해자를 1차로 접촉하는 경우가 많다.¹¹⁹⁾

효과적인 범죄피해자지원활동을 하기 위한 인원으로 자원봉사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자원봉사자들은 전문위원회와 연계하여 범죄피해자 및 가족에 대하여 상담, 병원안내, 응급치료, 범죄현장 정리, 수사기관이나 법정동행, 장례 등 다양한 형태의 실무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대학생, 직장인, 주부 등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충분한 인력을 갖추지 못하였다.¹²⁰⁾

117) 2006년 9월 현재 전국 56개 지원센터의 이사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기업인 27명, 의사·약사 12명, 도의원·교육의원 2명, 종교인 3명, 방송인 2명, 범죄예방위원회협의회 고문 3명, 교육인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나 있다(김용세, 위의 책, 435면).

118) 상담(분과)위원회는 상담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통상 상근직원이 우선 1차 상담을 한 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위원의 상담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의료지원위원회의 경우 의사, 한의사, 약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그 가족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한지와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할지 결정한 후 의료지원을 한다. 법률분과위원회의 경우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 피해자로부터 상담의뢰를 받은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형사절차 진행과정, 피해자의 권리, 권리 회복 방법,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참여방법 등에 관한 상담과 경우에 따라 소송을 대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화해중재(형사조중분과)위원회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조정을 실시하는 분과로서 사건의 성격에 따라 법률전문가 외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형사조정을 실시하고 있다(안희준, 앞의 논문, 69-70면).

119) 법무부에서는 2008년부터 범죄피해자지원 매뉴얼을 개발, 이를 바탕으로 사무국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안희준, 위의 논문, 69면).

120) 법무부는 2009년부터 자원봉사자의 참여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에 대

다. 예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사회단체보조금 또는 개인이나 기업의 기부금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2006년부터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하여 법무부로부터 기본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다.¹²¹⁾

라. 활동

1) 상담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하는 상담에는 전화상담과 면접상담이 있다. 전화상담은 위기상황전화, 피해자,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긴급 전화상담, 피해 후 정신적 지원을 위한 전화상담, 피해 후 단기 또는 장기 전화상담 등이 있다. 면접상담은 피해자와 가족·유족의 정신 심리 상담, 법률·의료 상담을 위한 전문가 연계 등을 통한 출장상담 등이 있으며 인터넷,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한 상담도 이루어지고 있다.

상담 유형도 법률상담, 형사사법절차상담, 감정적·심리적 지원 상담 등 다양하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여성상담센터 등과 연계하여 상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도 한다.¹²²⁾

2) 지원

한 전문교육과정을 개성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안희준, 위의 논문, 70면).

121) 2009년 4월 법무부 인권국 인권지원과에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재원은 법무부 15억7,598만4천원(16.9%), 자치단체보조금 41억708만9천원(44.2%), 기부금 36억1,130만원(38.9%)이었다(김용세, 앞의 책, 436면).

122) 서울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같이 일부 센터에서는 피해자와 후원자와 일대일 연계하여 지속적인 상담과 지원을 해주는 멘토(mentor)활동을 하는 곳도 있다(안희준, 앞의 논문, 71면).

지원은 경제·의료지원과 신변보호 및 위기개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의료지원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서 긴급생계비나 장학금의 지급 등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지 못하거나 기존의 복지시스템만으로 충분한 지원이 곤란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선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의료지원 활동은 의료지원위원회의 위원 또는 협력병원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심사를 통하여 의료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거나, 소속 위원들이 직접치료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각 센터 별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협력병원을 통하여 응급 피해자에 대한 조치, 피해자의 치료비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¹²³⁾

신변보호 및 위기개입은 범죄현장에서 신변보호, 수사기관이나 법정동행, 살인사건 현장 등 범죄현장 정리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피해자지원제도나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정보 등도 제공하고 있다.

3) 홍보

지역주민에 대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홍보활동은 주로 홍보지·팸플릿의 발간·배치·포스터 제작과 지역방송을 통한 지원활동을 홍보한다. 범죄피해자지원사례집 등의 발간도 하고 있다.

4) 기타

범죄피해자지원에 관한 연구조사 및 보고서 발간, 피해자지원을 위한 바자회의 개최, 생활비지원, 형사조정,¹²⁴⁾ 취약아동을 위한 학비지원과

123) 2009년 6월 현재 전국 287개 병원과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있다(안희준, 위의 논문, 71면).

124) 피해자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 중의 하나가 중재를 통한 범죄해결이다. 아무리 훌륭한 명판결보다 조정(중재)이 낫다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범죄피해자센터의 화해·중재위원회는 대부분 그 지역의 변호사, 법무사, 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박상식,

자조그룹의 구성지원 등도 하고 있다.

2. 특정범죄피해자지원기관

특정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관으로 대표적인 기관은 한국성폭력상담소¹²⁵⁾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991년 4월 13일부터 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 지원 활동과 성폭력의 원인 및 대책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인간중심적인 성문화정착과 여성의 인권 회복을 위한 활동¹²⁶⁾을 하고 있다.¹²⁷⁾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23조제1항). 성폭력피해상담소는 ① 성폭력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고, ②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병원 또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③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며, ④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및 ⑤ 기타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피해에 관한 조사·연구를 행

앞의 논문, 60-61면).

125)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상담소로부터 출발하여 상담소에 의해 완료가 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상담소는 상담을 통해 피해자에게 법률적·의료적 지원을 즉각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극도의 정신적 혼란과 위협을 해소시켜 주고, 지속적인 상담지원을 제공할 것인가 타 기관에 의뢰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또한 지속적 상담을 통하여 개인치료, 집단치료, 가족치료 등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하고 있다(윤상민, 앞의 논문, 381면).

126) 활동영역은 ① 성폭력피해생존자상담지원(전화, 면접·온라인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심리·의료·법률적 지원/성폭력피해생존자 쉼터 ‘열립터’ 운영), ② 성차별적 성문화 바꾸기(성차별적, 성폭력 문화 비판 및 감시/성폭력피해생존자 인권확보 활동/ 캠페인, 대중행사/교육, 조사·연구 및 홍보·출판/온라인 상의 반성폭력 활동), ③ 성폭력관련 법·정책 감시 및 제언(성폭력 관련 법률 제·개정 제언활동/여성, 성폭력 관련 정부정책 감시 및 비판) 등이다.

127) <http://www.sisters.or.kr/index.php>

한다(제2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사회복지단체 기타 비영리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25조).

이외에도 가정폭력상담소·성매매피해상담소·아동상담소 등이 전국적으로 산재하여 활동하고 있다.¹²⁸⁾ 이들 상담소의 한계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상담이 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범죄피해자들이 도움을 받고자 하여도 상담 이상의 조력을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제3절 범죄피해자지원시스템의 개선방안

현재의 범죄피해자지원시스템은 과거의 상황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많은 변화를 하였다.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과 피해자지원센터의 설립 등을 보면 우리나라는 국가가 주도해 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¹²⁹⁾

최근 국제적으로 ‘피해자의 르네상스’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은 국가마다 다른 정치·사회·경제적인 배경이 있지만,¹³⁰⁾ 국가가 범죄피해자를 위한 관심에 소홀했으며 그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에 관한 공정성 내지 형평성을 결여했다는 공통된 인식이 그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의 신보호법의 개정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학계와 실무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진일보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피해자학 연구의 출발점은 ‘범죄문제가 범죄자에 대한 처벌만으로 단순화

128)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의 경우 1990년대 초반부터 민간단체들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되고, 1990년대 후반 성폭력특별법과 가정폭력특별법 등의 제정으로 정부의 공식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이와 관련된 단체들은 양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되었다(김지선·이동원, 앞의 책, 25면).

129) 오경식, 앞의 논문, 13면.

130) 김성돈, 앞의 논문, 7면.

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다.¹³¹⁾ 현대 형법과 형사정책의 중요한 변화는 ‘처벌과 응보’가 아닌 ‘치료와 화해’의 개념으로 변하고 있다. 범죄는 한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공동체 또는 사회의 잘못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범죄로 인한 피해의 회복에 초점을 둔다면 가해자는 왜 자신이 죄를 행했는지 알게 되고, 피해자는 자신이 범죄의 대상이 된 원인에 의문을 가지면서 범죄를 해결하려는 노력¹³²⁾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범죄로 인한 피해의 유형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범죄로 인한 정신적·심리적 피해¹³³⁾가 있다. 범죄자들은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까봐 혹은 범죄를 상기시키는 사람이나 장소를 회피하기 위해 스스로 사회적 관계를 제약한다. 둘째, 범죄로 인한 신체적 피해¹³⁴⁾가 있다. 셋째, 범죄로 인한 경제적 피해¹³⁵⁾가 있다. 넷째, 범

131) 이러한 점에서 보면 피해자의 관점도 이것 하나만 가지고는 - 비록 그것이 가해자의 관점과 균형을 유지하더라도 - 현행의 형벌체계와 형사절차 속에서 보다 넓은 사회적 차원의 이해관계와 조화를 이루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종래의 형사절차와 형벌체계에 대한 변화를 수반함이 없이 피해자 관점만을 형사사법 시스템 속으로 통합하려는 태도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의 모색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김성돈, 위의 논문, 13면).

132) 박상식, 앞의 논문, 39면.

133) 범죄로 인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충격은 피해자를 살해함으로써 초래되는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와 충격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 다음은 폭력, 상해범죄의 경우에 그 고통으로 인해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정신적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다. 또 그 상처가 피해자의 몸에 남아 육체적 고통이 가신 이후에도 심리적 상처(Trauma)가 되어 정신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김재민a,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경찰의 행태변화를 위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3, 138면).

134) 범죄피해의 가장 전형적이고도 직접적인 형태는 육체에 대한 충격이다. 살인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육체적 고통의 측면보다는 오히려 유족들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의 문제가 더 부각될 것이나 상해나 폭행, 강도·강간죄 등의 경우에는 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함께 피해 당사자의 육체적 고통과 직접적으로 관련될 것이다. 육체적 고통의 피해는 정신적 피해에 비하면 관찰하거나 다루기가 더 용이한 면이 있다. 신속한 초동수사의 전개는 이러한 직접적인 육체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를 구출하거나 보호해줄 수 있다(김재민a, 위의 논문, 137-138면).

135) 범죄의 피해자는 범죄로 인해 사망하였을 경우 경제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가 하면, 무자력자인 범인에 의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치료비는 물론이고 노동기회의 상실로 인한 손해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손해 등을 전혀 보상받을 수가 없어서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 설사 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방법장치

죄로 인한 가족의 해체가 있다. 범죄는 범죄피해자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가장 치명적인 경우에는 가족의 해체로 나아가게 된다. 다섯째, 범죄로 인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¹³⁶⁾ 시스템의 개선방안은 이와 같은 범죄의 피해 유형을 고려하여 세워져야 할 것이다.

또한 범죄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법집행 기관에 신고하거나 고소할 경우 법집행 기관의 반응방식에 따라서도 상당히 범죄의 피해가 다르게 진행된다는 사실¹³⁷⁾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1. 구조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문제점

민간단체의 역할이 강조¹³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만한 역할

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이사를 하는 등의 피해 회복 이외의 영역에서 비용지출이 있게 되고, 정서적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전문가나 병원을 찾게 되기도 하고 휴직을 하게 되는 등 피해로 인한 비용지출은 지속성을 띠기도 한다. 또 피해자가 겪는 사회적 부적응으로 인해 본인은 물론 가족과 사회단체, 국가 등이 이들을 원조해야 하는 경우 이에 따른 비용지출을 초래한다(김재민a, 위의 논문, 139-140면).

136) 김지영, 앞의 논문, 17-28면.

137) 불행히도 우리의 법집행 기관은 피해자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피해자의 필요에 적절히 반응하도록 훈련되어 있지 않다. 형사절차에 미비점이 많고 법집행자들의 태도가 피해자에게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신고하고 거듭 조사에 응하는 불편함과 기나긴 절차를 감당해야 하는 고통은 대단히 큰 문제이다. 차라리 신고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제도는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범죄예방의 관건 중의 하나인 신고율의 향상은 민간인과 법집행 기관 사이의 신뢰 강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후자가 전자의 필요에 얼마나 적절히 반응하는가에 달려 있다(전수영, 앞의 책, 22-23면).

138) 민간단체의 역할이 강조되는 이유로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 있다. 첫째, 형사사법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관의 피해자보호시책에는 그 한계가 있다. 즉, 경찰·검찰 또는 법원 등이 피해자를 위해 아무리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더라도 그것은 실정법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 범인이 검거되고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으면 형사사법기관의 피해자 보호시책은 의미를 거의 상실한다. ... 둘째, 범죄피해자와 형사사법기관 사이에는 해소할 수 없는 정서적 간극이 존재한다. 형사사법기관은 사건의 실체 확인과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의 수행이 실현되고 있지 못하다. 현재의 범죄피해자지원시스템은 다양한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상담소의 경우가 그렇고 법무부와 검찰에서 주도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민간단체는 구조가 불안정하고 주로 소규모로 활동하고 있다.¹³⁹⁾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상근직원의 경우 지속적인 교육훈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¹⁴⁰⁾ 각각의 민간단체는 다양한 사업을 위해서 조직되었지만 대부분의 조직이 역삼각형의 구조를 갖고 있다. 일면 조직이 확대될 경우 유용한 인력이 쉽게 배치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전국적으로 각각 나뉜 상태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단체가 비효율적이라고 보인다.

민간단체의 경우 재정적 영세성을 띄고 있는 것도 범죄피해자지원시스템의 구조상 한계라고 할 것이다. 대부분 의욕적인 지방 유지나 변호사, 의사 등이 참여하고 있으나 소수의 활동전문가가 주축이 되고 있다.¹⁴¹⁾

궁극적인 목표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을 전적으로 고려하기는 어렵다. ... 셋째, 국가 재정상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전적으로 국가가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강경래, “민간 피해자지원조직과 경찰의 협력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6, 410-411면).

- 139) 상담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요건 등이 충분히 구비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특히 의료지원이나 법률지원의 경우에는 예산의 부족과 집행의 비신속성, 상담의 경우에는 상담원의 전문성 부족과 지위의 불안정 등이 중요한 해결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윤상민, 앞의 논문, 381-382면).
- 140) 상근직원의 비전문성은 피해자지원업무의 기획이나 프로그램관리능력의 미비로 인한 센터의 조직역량의 약화와 피해자지원서비스 질의 저하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김지선·이동원, 앞의 책, 265면).
- 141) 우리나라는 유교적 권위주의, 국가주도의 근대화, 남북한 간의 대립관계 등으로 시민사회의 능동성이 약하며, 시민사회의 발달이 일천한 상태에서 참여문화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였고, 공공의 이익에 대한 시민의식도 낮다.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 자원주의의 발달, 제도적 지원, 분권화, 공공의식 등에서 볼 때 비영리단체가 제대로 발달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이 아직까지 대중적 기반을 충분히 가지지 못하고 소수 활동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예산 및 회원 수 등에서도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자생적인 이유보다는 국가의 필요와 계획에 의하여 비영리단체가 조직되기도 하였다(김지선·이동원, 앞의 책, 109면).

재정의 확보방법도 제한되어 있고, 국가의 지원과 소수 참여자의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¹⁴²⁾ 범죄피해자에 관한 사회적인 관심이 낮은 이유도 범죄피해자지원시스템이 구조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보인다. 상당부분을 정부의 직·간접적인 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도 동일하다.¹⁴³⁾

나. 개선방안

시스템의 구조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각 시스템이 갖고 있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범죄피해자를 위한 바람직한 시스템의 구조는 효과적인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 역할의 수행이라고 볼 때 현재 처한 시스템 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규모로 구성된 범죄피해자를 위한 조직의 구조를 고유한 특성을 최

142) 자발적인 단체가 재정적으로 독립적일 때만이 창조적이고 비판적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정부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이 자발적인 단체를 오염시키고, 독립성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우 첫째, 정부의 지원이 장기간의 일반적인 재정지원이 아니라 대부분 단기간의 업무지향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단체의 직원들은 실질적인 공익활동보다는 프로젝트 신청업무를 수행하는데 몰두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 둘째, 다음해의 예산이 어디로부터 나올 것인가에 대해 너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예산의 중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하기 어렵게 되고, 따라서 민간단체로부터 기대되는 정부정책에 대한 감시통제기능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셋째, 자발적인 단체가 정부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 위한 한 전략으로 효율적이고 필요하고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이것에 실제적인 효율성이나 효과성보다는 우선적인 가치가 주어진다(김지선·이동원, 앞의 책, 47-48면).

143) 검찰주도적 설립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실들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관의존성을 버리고 자생력을 키워가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벌이지 않는 한 관변단체화 할 위험성을 다분히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종합대책이 형사사법기관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자의 형사사법기관에의 불신이 결국에는 증인과 참고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피해자들이 수사 및 재판에 대한 협조를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한다는 인식에서 실시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김덕재,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개선 방안: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82호, 한국법학원, 2004, 31면); 이는 범죄피해자종합대책이 결과론적으로는 피해자의 인권 및 피해회복에 있어 향상을 가져올 수 있겠지만, 대책의 필요성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관심보다는 형사사법체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에 우선권이 주어져 있음을 보여준다(김지선·이동원, 위의 책, 110면).

대한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¹⁴⁴⁾ 범죄피해자를 위한 역할을 함에 있어서 독자적인 한 조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도록 변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능력의 함양과 지속적인 지원¹⁴⁵⁾ 그리고 효과적으로 범죄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범죄피해자를 위한 역할의 수행에는 강력한 법적 배경을 갖춘 경찰과 검찰의 역할과 조직을 선도할 운영자도 필요하지만 범죄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도록 직접 지원할 섬세하고 자상한 조력자도 필요하다. 피해자지원업무 수행능력의 전문화는 상근직원과 자원봉사자 모두에게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조력자는 범죄가 발생하는 곳곳에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범죄의 발생은 어느 특정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범죄피해자를 위한 시스템 구조는 현재 활동 중인 단체를 최대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시스템 구조의 활성화는 각각의 단체와 기구에 관한 구체적이며 전문적인 능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횡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범죄피해자를 지원함에 있어서 가장 적절하고 적합한 조직이 어느 곳인가에 관한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태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144) 범죄문제를 범죄자만의 문제로 단순화하여 대응하고 있는 기존의 형사사법의 태도를 수정하여야 한다. 범죄는 과거의 일회적인 사건이지만 그 범죄사건의 영향은 장래에까지 미친다는 것을 고려하면 범죄의 해결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범죄자가 다같이 평화롭게 살아가야 할 지역사회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본다(박상식, 앞의 논문, 40면).

145) 상담소를 통한 피해자지원이 지금보다 더 전문화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담소에 대한 충분한 보조금지원과 아울러 일선에서 피해자지원을 하고 있는 상담원들의 직무 안정성이 요구된다. 아무리 좋은 시설과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 지원되더라도 이를 전문적으로 실행에 옮길 자원이 없다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전문성을 갖춘 상담원 확보를 위해서는 보수체계를 합리화하여 직무 만족도를 더 높여야 하며, 내실 있는 교육으로 상담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윤상민, 앞의 논문, 402면).

범죄피해자지원시스템의 구조상의 문제점의 개선방안은 뒤의 역할분산의 문제점의 개선방안과 연결될 수 있다. 즉 불합리한 구조의 문제점을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지역별로 활동하고 있는 소규모 단체 간의 연계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각각의 특성을 살린 정보의 공유는 필수적이다.

2. 역할분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문제점

현재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구나 단체는 유기적으로 조직화되지 못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간단체의 대부분은 여성·청소년 그리고 가정의 보호를 위한 역할에 충실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이나 조직체계를 갖추지 못하는 등¹⁴⁶⁾ 그 이유는 다양하겠으나 결과적으로 보면 범죄피해자를 위한 역할로서는 비효율적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를 위한 사회적 노력은 과거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인 조직 연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듯이¹⁴⁷⁾ 이들 기구나 단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작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¹⁴⁸⁾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부분의

146) 오경식, 앞의 논문, 14면; 현재 성범죄는 성폭력상담소에서, 아동성폭력은 해바라기 센터에서, 가정폭력은 가정폭력상담소에서, 그 외의 범죄피해에 대하여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서 일응 담당하고 있다. 또 경찰에서는 자체 피해자서포터가 지정되어 있고, 검찰에도 피해자지원담당관이 지정되어 있으나 범죄피해자가 어느 범죄피해자 지원기관에 호소를 하든지 간에 자신에게 가장 최적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연계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체계가 미흡하다(김현철, 앞의 논문, 63-64면).

147)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산재하는 피해자 지원센터, 형사사법기관, 그리고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유관 서비스기관들의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이동원, 앞의 논문, 53면).

148)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제도들 사이에 연계성을 갖도록 하는 것은 선진 복지국가들의 현

기구와 단체가 지역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며, 상이한 시기에 활동을 시작함으로써 독자적인 활동영역을 구축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통일적인 연계를 통하여 그 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작업은 매우 힘들다.

현재 기구와 단체가 연계되고 있는 사례로는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통한 연계 외에 ONE-STOP지원센터를 통한 연계가 있다. 이는 여성부·경찰·지자체·병원·법률구조공단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및 성매매 등 특정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의료지원, 법률지원, 수사 등의 통합지원을 수행하고 있다.¹⁴⁹⁾

나. 개선방안

범죄피해자를 위한 국가기관과 민간단체의 역할이 분산되고 있는 것에 관한 해결방안은 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망을 형성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하고 있거나,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단체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¹⁵⁰⁾ 이들을 하나의 연결망을 형성하는 것은 쉬운

대적인 흐름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범죄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들과 국가적인 제도들 사이에 원활한 상호협력과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 활동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범죄피해발생의 최초 단계로부터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치료 및 상담 등의 조력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범죄피해자 신속하게 범죄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이건호, 앞의 책, 238면).

149) 또한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긴급피난처, 해바라기아동센터 등 아동성폭력 전담센터,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지역협의체 등을 통한 연계망이 구축되어 있는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민간기구와 연계하여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성매매 등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보호, 의료지원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일반범죄의 경우보다 잘 구축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특정 몇 개 유형의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특정부처 중심으로 이뤄지는 측면이 강하고, 지원기관이나 시설, 민간기구가 난립하여 그 효율성이나 긴밀성, 중복 등의 문제는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여성 긴급전화센터(1366), 이주여성 긴급전화센터(1577-1366)를 통한 연계망이 있는데, 여성가족부,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민간기구와 연계하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연중 24시간 긴급 전화상담, 구조 등 위기개입, 타 기관 연계 등 안내를 하고 있으며 특히 이주여성의 경우, 6개 국어로 지원하고 있다(김현철, 앞의 논문, 97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청은 이미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제시되고 있는 만큼¹⁵¹⁾ 가능한 한 이러한 요청에 따른 노력이 이어져야 할 때이다.¹⁵²⁾ 2008년 제4회 범죄피해자보호실무위원회에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단체의 연계체제 강화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¹⁵³⁾

우선 범죄피해자를 위한 효과적인 역할분담을 위한 연결망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경찰)가 중심이 되고, 각종 범죄피해자지원단체가 참여하여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를 위한 활동은 민간단체에서 쉽게 주도할 수 없다. 범죄인이 중심에 있고 그 상대로서 범죄피해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범죄피해자를 위한 보호막으로서의 형사사법기관(경찰)은 민간단체에서 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¹⁵⁴⁾ 범죄인의 행동이나 사고는 민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으며,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책도 범죄인을 제외한 요소로만 세울 수 없는 특성이 있다. 범죄피해자는 가해자가 없는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150) 일반범죄나 특정범죄별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등 기관이나 민간기구 등의 단체가 많고, 연락처도 다양하며, 임무와 역할도 다양하다. 그 동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체제가 강화되어 왔으나, 아직은 미흡한 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각 보호·지원관련 기관·단체별로 고유의 기능과 연락처, 존재가치 등을 존중하되, 피해자의 입장에서 일목요연하게 쉽게 이해하고, 관련 기관·단체 종사자들의 입장에서도 관계기관·단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절한 안내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김현철, 위의 논문, 98면).

15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법인 범죄피해자보호법 상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대하여 통합적인 연계 중심축으로서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이미 부여해 놓은 상황이다(김현철, 위의 논문, 97면).

152)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국가 형사사법기관의 인식 및 역할변화 그리고 민간피해자지원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조관계를 구축하는 일이다(김성돈, 앞의 논문, 32면).

153) 그러나 이러한 민간단체들은 대부분 정부 각 부처의 보조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상태여서, 이들 단체 간의 횡적 연계체제 구축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각자의 영역에만 몰입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관부서인 정부 각 기관 간의 횡적·종적 연계체제 구축이 선결과제라 할 것이다(김현철, 앞의 논문, 93-94면).

154) 형사사법기관과의 공조 역시 중요하다. 형사사법기관과의 공조가 가장 중요해지는 부분은 피해자 및 피해자가 관련된 정보에 관한 것과 경찰이나 검찰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를 피해자지원센터로 연계하는 것이다(김지선·이동원, 앞의 책, 275면).

경찰이나 검찰 등 범죄피해자를 위한 국가기관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같은 민간단체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¹⁵⁵⁾ 즉 범죄피해자를 중심으로 범죄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전(全)방위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기관과 단체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미흡한 부분을 서로 보완하는 형태로 발전하여야 한다. 경찰이 의료진이나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들과의 연계를 공식적으로 제도화, 네트워크화하여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정보를 확보함과 아울러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켜 범죄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효과적으로 범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¹⁵⁶⁾

3. 홍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문제점

범죄피해자에 관한 연구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부분은 범죄피해자를 위한 기관이나 단체의 홍보와 관련된 문제이다.¹⁵⁷⁾

좀 더 많은 국민들이 범죄피해자를 위한 활동을 알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범죄피해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범죄피

155) 이러한 연계망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최근에 출범한 연합회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각 지역의 센터가 자생적인 민간단체로 출발하였다기 보다는 각 지역의 검찰청의 적극적인 선도활동을 기반으로 짧은 기간 내에 전국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각 지역의 센터가 효율적인 피해자지원활동을 위해서 전국적인 연계망을 가진 민간단체로서 자리매김 하는데 있어서 연합회의 역할은 더 더욱 중요하다(이동원, 앞의 논문, 53면).

156) 김은주, 이대성, 이미정, 이창한, “강간에 대한 경찰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9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1, 271면.

157) 연합회의 여러 가지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센터 근무자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총 15개 활동 영역을 중심으로 항목 각각에 대하여 연합회가 수행해야 할 업무로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 센터 근무자들은 연합회가 수행해야 할 다섯 가지 역할로 ‘피해자지원센터 홍보’, ‘정부나 지자체 지원확보’, ‘관련입법 및 정책마련활동’, ‘피해자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센터직원 인건비 표준화’ 등을 꼽았다(이동원, 앞의 논문, 47-49면).

해자구조제도가 국민에게 널리 인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¹⁵⁸⁾

원래 일반국민은 범죄에 익숙하지 않다. 따라서 직접 범죄의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들이 범죄피해자에게 관심을 보이기는 힘들다. 또한 범죄나 범죄피해는 빨리 잊어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는 하루도 빠지 않고 범죄가 발생하고, 간혹 신문이나 방송을 통하여 수일에서 심지어는 수 개월간 범죄에 관한 보도를 접하기도 한다. 범죄가 보도될 때에는 깊은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고, 경찰의 역할에 대한 전문가적인 비판을 하면서도 평상시에는 범죄와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이 사실이다. 사람들의 이러한 경향이나 습성을 무시할 수도 없고 무시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편안하고 즐거운 일에 집중하는 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바이고, 괴롭고 슬픈 일은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경향이나 습성에 변화를 주어야 할 때이다.

나. 개선방안

범죄피해자에 관한 기관이나 단체의 활동은 일반국민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일면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전제가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¹⁵⁹⁾ 범죄피해자들은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시선이나 눈총을 두려워하면서 스스로 사회적 관계를

158) 이건호, 앞의 책, 238면.

159) 소득이 많고 교육받는 정도가 높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건강 보증을 포함하는 추가적인 안전망을 가지고, 공공서비스와 사적 서비스를 모두 활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들은 피해자로서의 권리와 자격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소득과 교육정도가 낮고 사회적 지위를 가지지 못한 피해자들은 사적인 서비스를 활용할 구매력을 가지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들이 취할 자격이 있는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여 여전히 과거 잊혀졌던 피해자의 시기의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마초'와 같은 존재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형사사법기관이나 민간지원단체들은 시스템의 주변부에서 소외되어 있는 피해자의 권리와 서비스를 알리고 접근을 용이하게 할 책무를 강화해야 할과 동시에 복지적 차원의 피해자 지원책을 보다 강화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김성돈, 앞의 논문, 33-34면).

제약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홍보방법은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인 범죄의 피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의 이웃이며, 범죄피해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크고, 피해자의 인권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¹⁶⁰⁾

홍보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몇 가지 제시한다면 우선 교육기관을 통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둘째 언론을 통한 방법이 있고, 셋째 경찰이나 검찰 등 형사사법기관을 통한 방법이 있다. 그리고 일반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셜 등 문학이나 극화하는 방법 또는 정기적인 행사를 통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방법도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범죄피해자에게 홍보하는 방법은 경찰이나 검찰 등 형사사법기관에서 범죄피해자에게 홍보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가) 교육기관을 통한 홍보

범죄피해자를 위한 노력은 교육기관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범죄피해자에 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의 핵심은 범죄피해자가 결코 자신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범죄피해자는 범죄의 피해를 입는 순간부터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며, 그 도움은 범죄피해자 주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범죄피해자가 있는 장소 주변의 사람들이 범죄피해자를 배려할 수 있는 생각과 자세가 형성되어야 한다.¹⁶¹⁾

160) 김지영, 앞의 논문, 35면.

161) 범죄피해자가 처한 상황은 범죄피해자 개인의 상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그 공동체에 속한 그 누구도 그와 유사한 처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되는 과제인 것이다. 공동체가 범죄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는 한 그 누구도 범죄피해자가 되지 않을 것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 및 그러한 상황에 처한 범죄피해자에게는 공동체의 관심과 지원이 그러한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자원이 된다는 점은 범죄피해자구제도가 근거하여야 할 토대라고 할 것이다(이건호, 앞의 책, 237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저연령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등학교에 다니기 이전부터 횡단보도를 통하여 도로를 건너는 방법처럼 기초질서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다. 즉 이와 같은 논리에서 본다면 범죄피해자에 관한 홍보는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 등에서 생활의 한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수준에 맞는 교재가 마련되어야 한다. 물론 범죄피해자에 관한 보호와 지원의 필요성에 관하여 교육할 선생님 등에게 필요한 자료도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범죄는 분명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당하는 재난과도 같은 것이다. 따라서 범죄피해자는 그 상황에 대하여 현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해자가 있건 없건, 또는 그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건 구하지 않건 범죄피해자는 피해로부터 빨리 벗어나고자 한다. 그러나 범죄피해자의 노력이 주위의 환경과 무관하게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다. 1차 범죄피해자가 2차·3차 범죄피해자로 변하면서 계속 피해를 입는 것은 환경이 범죄피해자가 그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초등학교 등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통하여 홍보가 이루어진다면 그 효과는 그 학생들이 고학년의 학생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효과를 분명 볼 것이다. 초등학교에서의 교육의 효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범죄피해자를 돕게 되는 측면이 한 부분이고 범죄예방에 관한 측면이 다른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즉 범죄피해자를 도와야 한다는 교육을 받은 학생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고등학생 등에게도 교육을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 중·고등학생 또래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집단따돌림(소위 ‘왕따’나 ‘빵셔틀’ 등)은 가해 학생들이 피해자를 괴롭힘으로써 일종의 쾌감을 얻기도 하지만 가해 학생이 약자인 피해 학생 등을 보호받고 지원받아야 할 피해자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¹⁶²⁾ 따라서 정규 교과목으로 피해자를 위한 과목이 개설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기적인 교육이 범죄피해자를 위한 홍보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한다.¹⁶³⁾ 초·중·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통한 홍보는 그들이 성인이 되는 2-3년 후 또는 10년 후에 범죄피해자를 위한 적극적인 지지자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자학의 개설도 적극 지원되어야 한다. 대학은 다른 교육기관과 구별되는 넓은 캠퍼스가 있고, 그 곳에서의 범주는 대학생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학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비공개적인 해결¹⁶⁴⁾을 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관심도 소홀하였다. 하지만 대학이라고 하여 범죄피해에 관한 주의를 낮출 이유는 없다.

경찰대학에서는 피해자학이 교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에는 피해자학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피해자학에 관한 학문적 기초가 미약한 점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피해자에 관한 관심이 적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양과목이나 전공과목으로서 피해자학에 관한 학문적 접근과 과목개설을 통하여 관심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162) 집단따돌림의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은 아직도 분명치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답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동조를 강조하는 학생들의 획일주의적 사고방식 때문에 집단따돌림이 나타났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획일성에 따르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응징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 집단따돌림이 최근 학교에서 나타나는 교실붕괴와 연관된다는 주장도 있다(노성호, “집단따돌림을 통한 피해와 그 영향”, 피해자학연구 제9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1, 27면).

163) 비행에는 일종의 기술적인 면이 있으며, 그리고 기술은 학습된다. 피해를 입은 소년은 피해 체험을 통해 비행의 수법을 학습하게 되고 다른 피해자를 찾아 그에게 위해를 가해 이번에는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미야자와 고이치/장규원 역, 앞의 책, 284면).

164) 이것은 현실세계와는 동떨어진 사색과 토론의 장으로서의 대학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교육지책이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대학들도 재학생들이 당하는 범죄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캠퍼스의 특성이 대학생들의 범죄피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다는 점은 대학이 취할 수 있는 역할의 중요성을 잘 말해준다고 하겠다(박철현, “대학의 특성과 캠퍼스범죄피해”, 피해자학연구 제9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1, 155면).

대학에서의 과목개설에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강의실에서의 이론적 연구 외에도 실제로 범죄피해자를 접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됨으로써 이론과 실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범죄피해의 실제사례의 제시와 피해자를 위한 노력의 성과 그리고 범죄피해자를 위한 제도와 국가적 차원의 지원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새로운 방안이 학생들로부터 제시될 수 있는 형태로 진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언론을 통한 홍보

범죄에 관한 신문이나 TV 등 방송과 언론에서의 보도는 고정적인 분량과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범죄를 구체적으로 분류할 때 어찌면 보도 내용의 상당부분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 최근의 지방선거에서도 신문이나 방송은 당선자에 관한 내용을 보도하면서도 선거와 관련된 범죄를 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우는 드물다. 다만 문제의 제기에만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범죄피해자에 관하여 언론을 통한 홍보는 매우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나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언론 등을 접하는 남녀노소 모든 국민이 그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간혹 흉악한 범죄로 평가되는 아동성폭행범의 범행에 관한 많은 지면을 통해 보도하면서도 그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되고 있지 않다. 범죄피해자 그 가족은 매스컴의 보도 자세에 평생 잊혀 지지 않는 깊은 상처를 입기도 한다.¹⁶⁵⁾

언론을 통한 홍보로는 이와 같이 많이 보도되고 있는 범죄사건에 대하여 범죄피해자를 위한 기관과 단체가 그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보는 경찰

165) 미야자와 고이치/장규원 역, 앞의 책, 25면.

이나 검찰 혹은 유관단체에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가능하다면 언론 등 방송매체를 통하여 기획기사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유용하다고 하겠다. 20여 년간 국내 학자들의 연구와 단체의 활동은 나름대로 개별적인 사안과 해결책에 관한 비법들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범죄피해자가 믿고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다)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홍보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홍보는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불특정 범죄피해자와 그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를 의미한다. 범죄피해자로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오는 사람들은 직접 그리고 즉시 피해회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 현재도 부분적으로는 범죄피해자들을 상대로 범죄피해자를 위한 보호·지원제도와 기구 그리고 단체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실은 문제이다.¹⁶⁶⁾ 예컨대 범죄피해자를 위한 안내서를 비치하는 데에도 예산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예산상의 문제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국가의 책무로 이해한다면 그다지 부담이 될 수 없다고 본다.¹⁶⁷⁾ 형사사법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범죄피해자를 배려하는 태도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 시점에서는 당연할

166) 경찰의 인권보호센터가 피해자에 가장 밀착된 피해자 지원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의 인권보호센터에서 하는 피해자 지원서비스는 법률적 상담과 정보제공 정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발생 직후 받아야 하는 지원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할 수 있다. 더구나 일부 피해자의 경우 경찰이 피해자 지원 제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소개하지 않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때문에 인권보호센터에서 범죄피해자들에게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방안, 범죄피해자 지원기관의 이용 등에 관해 충분히 주지시켜 시기적절하게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피해자 지원센터는 피해자 연계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경찰의 협조를 받아낼 필요가 있다(김지영, 앞의 논문, 34면).

167) 유관기관에 홍보물을 배포·비치하고 ... 이러한 홍보물에는 피해자 지원의 기준을 명시하여 어떤 범죄와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피해자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지영, 위의 논문, 35면).

수도 있다. 따라서 제4장에서 제시하는 경찰공무원의 범죄피해자를 위한 교육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 기타 홍보방법

범죄에 관한 영화와 소설 등은 많은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다. 직·간접적으로 범죄가 등장하지 않는 영화나 소설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범죄피해자를 위한 영화나 소설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범죄에 관한 관심은 범죄인에 대한 공분과 스텔이 중심이 되지만 범죄피해자를 위한 제도나 활동은 배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범죄피해자에 대한 제도나 활동이 증시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범죄피해자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최근에 이루어졌고 제도적으로 범죄피해자를 위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를 소재로 다루는 문학작품이나 영화가 등장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소재로 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범죄피해자를 위한 필요성의 홍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홍보방법의 하나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정기적인 행사를 통하여 하는 방법이 있다. 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짓기나 각종 작품공모 또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논문공모 등도 가능하다. 특히 경찰 등 국가기관이나 단체가 이러한 활동을 한다면 그 효과는 높아질 수 있다고 하겠다. 범죄피해자를 위한 노력은 어느 한 부서나 단체가 전담할 수 없다.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협력체계를 갖추어나갈 때만 효과적으로 될 것이다.

제4장 경찰의 범죄피해자지원제도와 개선방안

제1절 경찰의 범죄피해자지원제도

1. 의의

경찰은 범죄피해자와 사실상 가장 밀접하게 관계하는 기관이다.¹⁶⁸⁾ 경찰도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범죄피해로부터 가능한 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근의 소위 ‘범죄피해자를 위한 미란다 원칙’¹⁶⁹⁾도 그 중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경찰의 범죄피해자를 위한 역할수행이 그리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고,¹⁷⁰⁾ 또한 경찰 외부에서도 경찰에게 그 역할을 강하게 요구

168) 또한 피해상황의 해소 및 경감, 피해확대의 방지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본래의 업무로 하는 중요한 행정기관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강경래, 앞의 논문, 407면); 경찰은 범죄피해자를 최초로 접할 뿐 아니라 시종 긴밀히 접촉하는 국가기관이다. 특히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해 줄 의무를 지고 있는 경찰이기에 피해자의 보호에 대한 1차적 책임이 경찰에게 있다는 것은 불문가지이다(이기호,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 피해자학연구 제4호, 한국피해자학회, 1996, 35면).

169) 2010년 5월 9일 경찰청은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각종 권리를 알리는 제도를 10일부터 시범 운영한다”며 “형식적으로 알리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진술조서와 함께 확인서에 서명을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살인·강도·방화·조직폭력·성폭력·뺑소니 등 강력범죄에 의해 피해를 본 이들이 고지 대상이다. ... 경찰은 이 제도를 두 달 정도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고 법무부·대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7월부터 전국의 경찰관서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강력범죄 피해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는 1. 수사 진행사항을 통지받을 권리, 2. 경제적 지원을 신청할 권리(범죄피해자 보호법 : 가해자의 재산 없어도 구조금 지급, 범죄피해자보호 기금법 : 600억원대 기금 조성), 3. 수사기관에 피해진술과 관련 자료 제출할 권리, 4. 상담 지원을 신청할 권리, 5.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중앙일보 2010. 5. 10); 2010년 7월 5일부터 피해자를 위한 미란다 원칙이 전국 경찰관서에서 고지되고 있다(인권보호센터 담당자 장미이).

170)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범죄로 인해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입거나 경제적 궁핍으로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범죄피해자들이 형사절차를 통하여 범죄피해에 의한 고통이 심화된다면 결국 형사사법에 대한 실망과 불신의 주된 원인으로 전화된다.¹⁷¹⁾ 이러한 측면에서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역할은 국가기관 중 어느 부서보다 중요함을 인정해야 한다.

최근에 몇몇 연구에서 경찰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한계에 봉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범죄에 관한 비전문가들의 범죄피해자 지원이 범죄와 동떨어진 개인의 특성에 기초한 지원으로 이어지고, 여러 요소에 의하여 범죄피해자를 위한 보호·지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경찰의 범죄피해자를 위한 자체적 노력을 보면, 우선 2004년 6월에 범죄피해자보호의 세계적 추세에 따라 경찰청 수사국 산하에 범죄피해자대책실을 신설하고,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피해자보호업무 담당직원을 배치하였다. 2005년 상반기에는 피해자대책실을 경찰청 인권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보호대책을 경찰 인권보호정책의 일환으로서 보다 체계적으로 전개할 기초를 세웠다. 그 과정에서 한국 경찰의 피해자대책이 크게 발전하였음은 물론이다.¹⁷²⁾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경찰 본연의 활동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는 것은 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활동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낮을 뿐만 아니라, 몇몇 경찰의 잘못된 행태가 대중의 경찰에 관한 관심을 호도하기 때문이다.¹⁷³⁾

고통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검찰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에서 제대로 대우 받지 못한다. 그들은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방법으로 취급될 뿐, 자신의 관심사 또는 의견을 피력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가해자가 기소되어 처벌 받더라도 피해자에게는 아무 혜택도 없다. 기껏해야 감정적 만족을 느끼도록 요구받을 뿐이다(김용세·류병관, 앞의 논문, 138면).

171) 송광섭, 앞의 논문, 101면.

172) 김용세·김재민, 앞의 책, 2면.

173) 지금까지 경찰의 활동을 공공의 안전과 질서의 유지를 위한 것이라 하며, 국민의 인권과 경찰의 관계에 있어서도 국민의 인권을 경찰이 침해하는 면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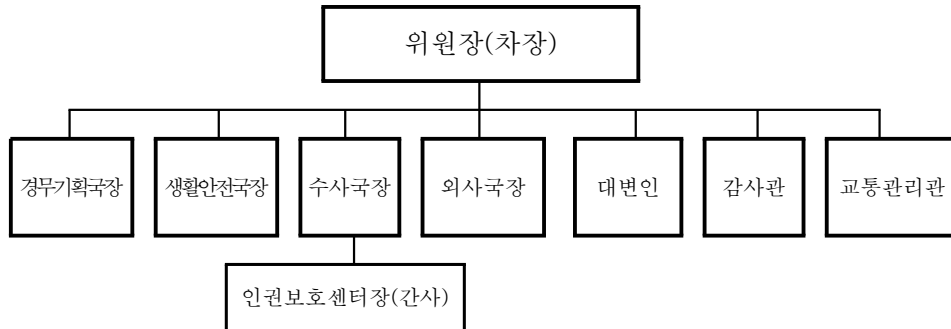
2.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 인권보호센터

가.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2004년 8월 17일 경찰청훈령 제428호로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규칙(개정 2009. 8. 25. 훈령 제563호, 이하 ‘보호규칙’이라 함)은 “경찰의 적극적 보호활동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함을 목적”(제1조)으로 한다.

피해자보호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제4조), 위원회는 위원장(경찰청 차장)과 경무기획국장, 생활안전국장, 수사국장, 외사국장, 대변인, 감사관, 교통관리관과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로 인권보호센터장을 두고 있다(제5조). 조직구성을 보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보호규칙 제6조는 위원회의 임무를 피해자 보호 관련 중요시책의 심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수사에 있어서 단서가 되거나 혹은 증거를 제공하는 객체라는 인식이 있어 피해자보호를 위한 활동은 범죄수사를 위한 부수적인 것이거나 혹은 반서적인 것이라고 생각되어 왔다(강경래, 앞의 논문, 407면).

의·의결(1호), 피해자 보호업무에 관한 관련 기능 및 지방청간 업무의 조정(2호), 피해자 보호업무의 분석·평가 및 발전방향 협의(3호), 기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의 처리(4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피해자보호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함)를 두고(제8조제1항), 위원장은 경찰청 수사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조정과장, 생활안전과장, 수사과장, 인권보호센터장, 외사수사과장 홍보담당관, 감찰담당관, 교통기획담당관과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구성한다(제8조제2항). 조직구성을 보면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나. 인권보호센터

인권보호센터에 범죄피해자를 위한 부서로 범죄피해자대책계가 있다. 범죄피해자대책계는 피해자 관련 치안정책 수립 및 종합·조정과 피해자 관련 법령·지침 정비 및 교육·홍보를 담당하고 있다.¹⁷⁴⁾

3. 범죄피해자대책관 · 범죄피해자 서포터

174)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외에 가장 많이 이용한 지원기관은 경찰청의 인권보호센터였다. 범죄피해자들의 40% 가까운 비율이 수사기관을 통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영, 앞의 논문, 34면); 강경래, 앞의 책, 407면.

가. 범죄피해자대책관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각 지방청 및 경찰서에 범죄피해자대책관(이하 ‘대책관’이라 함)을 두고 있다(제9조) 대책관의 업무는 피해자 통지 등 피해자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 및 상담 체계 구축(1호), 유관기관·단체와의 연락 및 협조(2호),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호), 피해자 보호 관련 통계의 작성 및 보고(4호), 기타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5호)이다.

나. 피해자 서포터

범죄피해자 서포터 제도는 2004년 9월 경찰청에서 살인·강도·강간 등 특정 강력범죄가 발생할 경우 초기에 피해자를 전담하여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서포터는 초동수사시의 지원활동도 중요하지만 사후 지원활동도 매우 중요한 업무로 되어 있다.¹⁷⁵⁾

피해자 서포터는 평상시 형사활동 또는 지역경찰 활동 등 기본업무를 수행하며, 1인 수사사건은 사건담당자가 담당하며 1개팀 이상 전종사건은 지정된 서포터가 활동한다. 살인·강도·강간·방화·조직폭력 등 대상사건이 발생할 때에는 일반인·타경찰관의 무분별한 접근 및 중복된 질문을 차단하고 피해자 창구를 단일화하고 있다. 즉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서포터의 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접촉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다. 피해자 서포터는 피해자에게 명함 및 피해자안내서 등을 교부하고 상담기관·의료기관·형사절차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¹⁷⁶⁾

또한 피의자 검거 여부 등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175) 김재민, 범죄피해자대책론, 진리탐구, 2006, 296면.

176)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의 ‘통합피해자 안내시스템’을 활용하여 피해자 지원제도·단체를 검색하여 안내하고 피해유형별 안내서를 출력하여 제공하고 있다.

보복가능성 등을 발견할 때에는 지구대 등과 협조하여 신변보호조치를 행하고 있다. 지구대 서포터는 피해자 집·주변 등에 대한 방법활동의 강화 및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수사진행상황에 대하여는 ‘SMS자동문자통지 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통지하며, 이 경우 피해자의 희망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있다. 피해자서포터 활동 내용 등을 범죄정보관리시스템에 전산화된 피해자지원카드에 기재하고 피해자가 보호·지원을 원하는 않는 경우, 보호나 지원의 거부일시·방법(구두, 전화, 서면 등)·사유 등을 조치내역 란에 기재 후 보호나 지원을 위한 접촉을 지양하고 있다.

일선 수사부서 근무자들은 수사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운용되어 이러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는 나름의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¹⁷⁷⁾

4. CARE팀(피해자심리 전문요원)

CARE Team(Crisis intervention Assistance & REsponse)의 정식명칭은 피해자심리 전문요원이다. CARE팀은 범죄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찰의 위기개입·지원·대응팀으로 심리학을 전공하거나 심리상담 경력을 가진 전문경찰관(경장 특채)으로 정신적 충격이 심한 범죄(주로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사건)피해자를 전문적으로 상담·지원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피해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2006년 8월 3일 11명을 선발하여 2009년 현재 서울(3인), 부산(2인), 대구(2인), 인천(2인), 경기(2인)지방경찰청의 강력계나 폭력계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범죄피해자를 찾아 심리평가와 상담을 통해 심리안정을 유도하고, 피해자 지원단체와 연계하여 각종 지원을 하는 것을 주요임무로 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상담한 피해자의 사후관리와 범죄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일선 경찰관의 교육·자문, 피해자

177) 김재민, 위의 책, 298면.

지원단체와의 연계체계 유지·확대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¹⁷⁸⁾

2008년 피해자심리전문요원 활동실적을 죄종별로 보면 <표 3>과 같다. 상담한 범죄피해자 유형은 살인 57건, 성폭력 123건, 강도 77건, 폭력 42건, 방화 4건, 기타 135건으로 합계는 438건이었다. 범죄피해자에 관한 활동이 성폭력이 가장 많은 123건으로 28%를 점하고 있다.

<표 3> 2008년 피해자심리전문요원 활동실적(죄종별)¹⁷⁹⁾ (단위 : 건)

계	구분	살인	성폭력	강도	폭력	방화	기타
438		57	123	77	42	4	135

그리고 2008년 피해자심리전문요원 활동실적을 활동별로 보면 <표 4>와 같다. 현장출동 152건, 심리평가 144건, 상담 1,083건, 정보제공 817건, 단체연계 211건, 기타 114건으로 합계 2,521건이었다. 활동별 활동실적에서는 상담이 1,083건으로 약 43%를 점하고 있다.

<표 4> 2008년 피해자심리전문요원 활동실적(활동별) (단위 : 회)

계	구분	현장출동	심리평가	상담	정보제공	단체연계	기타
2,521		152	144	1,083	817	211	114

이상의 활동에서 볼 수 있는 사실은 아직 그 활동실적이 높지 않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범죄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숫자는 위에서 나타난 숫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아직 경찰이 범죄피해자를 찾아가는 지원이 정착되어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5. ONE-STOP지원센터

2005년 8월 31일 경찰병원에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

178) 경찰청, CARE팀 범죄피해자 지원 우수사례 희망으로의 한걸음, 2007, 1-2면.

179) 경찰청, 2009 경찰백서, 175면.

센터'를 개소하였다. ONE-STOP지원센터의 개소는 충격적인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여러 병원과 경찰관서를 전전하며 2중·3중의 고통을 받던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었다.

이후 더 많은 범죄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간담회와 관련부처 협의회 및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ONE-STOP지원센터의 전국 확대 필요성에 대한 범정부적 공감대를 이끌어 냈고, 2005년 12월에 부산의료원에 ONE-STOP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경북·울산·강원·충북 등 전국 14개 지역 15센터를 설치하였다. 2008년 12월에는 서울 서남부권의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서울시립 보라매병원에 추가로 설치하여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였다. ONE-STOP지원센터현황을 보면 <표 5>와 같다.

<표 5> ONE-STOP지원센터현황(16개소)

지방청	병원	지방청	병원
서울	경찰병원	대구	대구의료원
부산	부산의료원	광주	조선대병원
경북	안동의료원	대전	충남대병원
울산	동강병원	경기남부	아주대병원
강원	강원대병원	경남	마산의료원
충북	청주의료원	제주	한라병원
전북	전북대병원	경기북부	의정부병원
인천	인천의료원	서울	보라매병원

ONE-STOP지원센터는 여성경찰관·상담사·간호사 등이 24시간 상주하면서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의료·상담·수사·법률 등의 통합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병원진료 후 피해자가 진술녹화 및 조서 작성을 위해 경찰서에 가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센터 내 진술녹화실을 설치하여 이중조사 및 수치심 유발을 방지하고 있으며 피해자 치료 및 증거채취를 위해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춘 영상진료실을 설치하였고 피해자 안정을 위해 상담실 및 침대와 소파를 갖춘 피해자 안정실을 구비하였다. 이 밖에도 법률구조공단·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의 전문 변호사들이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 소송지원과 범죄피해자구조 등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2008년 한 해 동안 ONE-STOP지원센터는 10,074명의 성폭력(6,818), 가정폭력(2,312), 학교폭력(209), 성매매(70), 기타(665)으로 방문한 피해자에 대해 상담(18,258), 진료(7,335), 증거채취(2,571), 진술녹화(1,977), 피해자조서 작성(5,502) 등 총 35,643건을 지원하였다. 2008년 ONE-STOP지원센터 운영실적을 보면 <표 6>과 같다.

<표 6> ONE-STOP지원센터 운영실적('08)

피해유형별 방문자(명)						지원 내용(건)					
계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매매	기타	계	상담	진료	증거채취	진술녹화	피해자서
10,074	6,818	2,312	209	70	665	35,643	18,258	7,335	2,571	1,977	5,502

특히 일반 성폭력상담소의 고소·고발률이 10% 전후('02-'06, 여성가족부)임에 비해 2008년 ONE-STOP지원센터 방문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80%가 고소를 제기, 그동안 여러 기관을 전전하며 반복진술과 신분노출을 부담으로 법적 대응에 소극적이던 피해자들이 ONE-STOP지원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되는 등 여성·아동 범죄피해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으며 일본·미국 등 해외에서도 성폭력피해자 지원 우수제도로 소개하고 있다.¹⁸⁰⁾

제2절 경찰의 범죄피해자지원시스템의 개선방안

1. 의의

180) 경찰청, 2009 경찰백서, 79면.

경찰의 범죄피해자를 위한 부분적인 노력이 사회적으로 범죄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시도와 연계될 때 그 효과는 배가될 수 있다. 왜냐하면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기여는 신종범죄의 대책에서도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⁸¹⁾ 그러나 아직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대책이 충분한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인다.¹⁸²⁾

2010년 6월 7일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에 배달된 편지와 감사패는 소액사기혐의¹⁸³⁾의 피해자들이 범인을 검거한 경찰에게 감사하는 내용이였다.

경찰이 범죄인을 검거하고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경찰 본연의 임무이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들이 경찰에게 감사하는 표시를 하는 것은 예외적인 일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경찰이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경찰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와 같은 사례가 경찰을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이다.¹⁸⁴⁾ 한 두 번의 사례로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쌓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경찰은 국민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

181) 사회가 복잡해지고 물질문명이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새로운 범죄유형이 속속 등장하고 ... 우리나라도 이러한 변화의 조류에서 벗어날 수 없음은 물론이다.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안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도 경찰의 피해자 대책은 필요하다. 범죄신고와 증언 등 시민일반의 적극적 협조 없이는 사범경찰작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김용세·김재민, 위의 책, 43-44면).

182) 경찰 업무수행의 전 과정에서 범죄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한 직무집행 시스템을 정비하는 한편, 모든 경찰관이 범죄피해자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홍보·교육하는 것만으로 정책목표가 달성되는 것도 아니다. 일선 경찰관 모두가 그 정책을 이해하고 그에 부합하는 직무집행 원칙들을 충실히 실천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하기 위한 수단도 함께 강구되어야만 비로소 성과를 거둘 수 있다(김용세·김재민, 위의 책, 2면).

183) 웹 사이트에 '완전한 새 책입니다. 운송비 포함 3만 원에 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려 한 건에 책값으로 3만-4만원씩, 2월 13일부터 4월 1일까지 173회에 걸쳐 734만원을 편취한 혐의(동아일보 2010. 6. 8).

184) 김용세·김재민, 위의 책, 44면.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역할은 이러한 점에서 경찰의 이미지 개선과 경찰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하다. 특히 경찰이 범죄피해자를 위한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활동할 때 그 영향력은 매우 클 것이다.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노력은 피해회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범죄피해자가 경찰을 신뢰하고 자신들의 피해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범죄의 진압과 예방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범죄에 대한 경찰의 역할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¹⁸⁵⁾

또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경찰의 업무수행 중 피해를 입은 경찰에 대한 보호·지원도 필요하다.¹⁸⁶⁾ 범죄와 가장 많이 접하고 사람들은 경찰이며, 범죄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가장 많이 노출되는 사람은 범죄피해자를 제외한다면 경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을 범죄피해자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하는 연구는 거의 없다.¹⁸⁷⁾

경찰의 범죄피해자지원시스템은 ONE-STOP-SERVICE의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ONE-STOP-SERVICE는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를 입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경찰이 담당하는 방법이다.¹⁸⁸⁾ 따

185) 피해자의 신뢰와 협조는 이처럼 경찰의 수사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권리보호에 앞장서는 인권경찰의 이미지를 고양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김용세·김재민, 위의 책, 2면).

186) 생사가 관련된 현장에서 수사를 담당하며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을 접하고, 죄책감, 우울, 정회 반응, 소외감, 정신신체적 질병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문성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적 보호의 확대”, 범죄피해자에 대한 Care, 한국피해자학회 2009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피해자학회, 2009, 45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하드웨어적 요소로서의 법령·제도·조직·예산문제가 아무리 잘 갖추어진다 하더라도 소프트웨어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업무담당자의 의식이나 행태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김재민a, 앞의 논문, 130면).

187) 경찰이 폭력사건의 빈번한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수사재판기록을 열람해 본 결과 그러한 사건이 상해 사건의 대략 1학 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우려할 만한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상해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와 함께 일어나는 단순폭행을 포함할 경우,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에 범죄자 또는 일반인에 의하여 신체적 손상을 당하거나 직·간접적인 손상의 위험에 노출된 정도는 더욱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박순진, “경찰의 폭력범죄 피해에 대한 고찰”, 피해자학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 176면).

라서 범죄피해자는 ONE-STOP-SERVICE에서 경찰을 통해 범죄피해자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전방위적·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범죄피해자가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ONE-STOP-SERVICE는 형사사건의 발생과 함께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능력과 자세를 전제로 한다.¹⁸⁹⁾ 사건의 발생 후 ONE-STOP-SERVICE의 진행과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범죄나 특정범죄의 경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① 범죄가 범죄의 신고 등 어떤 경로를 통하든 경찰이 인지하게 되면 범죄피해자를 위한 전담경찰이 수사경찰과 동시에 활동을 시작한다.

② 범죄피해자와 관련되는 모든 관점(경제적·정신적 피해나 신체적 위험)에서 접근한 후 범죄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원방법을 동시에 제공한다.

③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과 기초적인 정신·심리적 치료를 제공한 후 기타 지원방법(변호사의 선임이나 손해배상의 청구 등 법률적인 대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수사절차와 재판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신변안전의 확보가 관련될 경우 직·간접적인 지원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재판이 확정된 후에도 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인 지원확보방안을 제시한다.

188) 지원기관들이 홍보를 넘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 범죄 피해를 당하게 되면 의욕이 사라지고 당장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공황상태에 빠지게 되므로 피해자 자신이 능동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기 힘들다(김지영, 앞의 논문, 35면).

189) 국가 형사사법기관의 종사자들은 첫째, 형사사법기관의 구성원 각자가 새로운 사법철학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헌신적으로 실천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고, 둘째, 피해자들을 고객으로 전제하는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에서 피해자의 협조가 없으면 형사사법 제도가 밑바닥부터 흔들리게 됨을 인정하고 권리의 주체로서의 피해자에 대해 책무를 가지는 봉사자로서의 역할변화를 받아들여야 하며, 셋째,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들의 성공조건인 충분한 인적 물적 인프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김성돈, 앞의 논문 32-33면).

ONE-STOP-SERVICE는 범죄피해자에게 최소한 경찰 전담자 1명이 배정 되어, 범죄피해자를 가족처럼 지원하는 의미이다.¹⁹⁰⁾ 따라서 경찰 전담자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각종 제도를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지원방안에 관하여 전국적인 망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찰이 ONE-STOP-SERVICE의 주체가 될 경우 현재 민간단체 중심으로 추진되는 제도가 일대 혁신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 왜냐하면 경찰의 역할은 주로 범죄의 예방과 진압이며, 이러한 역할 외에 범죄피해자를 위한 역할은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시에 경찰이 범죄피해자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뭔가 다른 속셈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근시안적 비판은 경찰이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이 효과를 발휘할 때에는 사라질 것이다. 경찰이 범죄피해자를 위한 새로운 역할에 익숙해지고 범죄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주체로서 등장하여야 한다.¹⁹¹⁾

ONE-STOP-SERVICE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제시하는 시스템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선은 빠를수록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190) 미국 등 서구 여러 나라들이 피해자 안전 확보를 담보할 목적으로 체포강행정책(mandatory arrest policy)을 쓰고 있는 것도 그 근원을 살펴보면 피해자 신변안전 확보와 관련되어 있다(Eve S. Buzawa, et al, Domestic Violence : The Criminal Justice Response, Thousand O만, CA: Sage. 2003, 126면 이하).

191) 경찰의 수사 활동은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써 ‘犯罪統制的 觀點(Crime Control)’이나 ‘法執行的 觀點(Law Enforcement)’으로 이해하여 왔던 것이 종래의 대체적인 경향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경찰의 수사 활동은 범인체포 및 증거 수집을 통한 성공적 기소와 처벌에 큰 관심을 기울여왔던 것이다. 그러나 범죄로 인해 초래된 피해의 원상회복을 형사사법절차의 중요한 이념 중의 하나로 보는 오늘날의 ‘回復的 司法(Restorative Justice)’의 관점에서는, 경찰의 수사 활동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요청되어지고 있다. 경찰은 이제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임무에도 충실해야 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의 인격권·행복추구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입은 여러 형태의 손실로부터 신속히 회복할 수 있게끔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집행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요컨대 경찰의 수사 활동이 ‘受動的인 法執行作用’으로서의 성격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수사 서비스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김재민a, 앞의 논문, 130면).

경찰만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능한 한 빨리 범죄 피해자가 범죄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¹⁹²⁾

피해자가 범죄의 피해를 입은 후 처음 접하는 형사사법기관이 대부분 경찰이다.¹⁹³⁾ 또한 경찰은 범죄가 발생한 후 가장 먼저 피해자를 마주할 뿐만 아니라 사건을 처리하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장 많이 접촉한다.

따라서 경찰은 범죄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피해자임을 감안하고 가족처럼 피해로 인한 고통을 함께 한다는 자세로 범죄피해자를 대해야 한다.¹⁹⁴⁾ 하지만 경찰이 범죄피해자의 가장 적합한 조력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경찰이 범죄피해자와 처음으로 접촉하면서 범죄피해자에게 조력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범죄자에 대한 수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¹⁹⁵⁾ 따라서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대한 정보제공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제 1차 접촉 당시 경찰의 절절한 조력제공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¹⁹⁶⁾

192) 물질적인 피해회복 지원과 심리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생활의 안정적인 복귀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보호 제도는 여전히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에는 미흡한 여러 가지 점들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김현철, 앞의 논문, 62면).

193)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전 형사사법기관의 책무이다. 특히 범죄피해자가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수사기관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수사태도 및 보호조치는 이후의 모든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송광섭, 앞의 논문, 114면).

194) 송광섭, 위의 논문, 114면.

195) 경찰과 범죄피해자와의 첫 만남이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경찰은 범죄피해자로부터 사건경위에 관한 명쾌한 설명을 듣고자 사무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지만, 범죄행위의 충격 속에 있는 피해자는 정서적으로 혼란한 상황을 진정시켜 줄 외부의 자상한 도움을 바라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찰과 범죄피해자간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양자간에는 갈등이 있을 수 있다(김재민a, 앞의 논문, 129면).

196) 스위스와 독일 등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들 국가에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지원을 위해서 ... 범죄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조인제공의 활동을 하며 이러한 기회에 범죄피해자보상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이건호, 앞의 책, 231면).

따라서 형사사법기관의 피해자보호 대책은 수사절차에서 피해자보호를 우선시하여야 한다.¹⁹⁷⁾ 경찰의 범죄피해자지원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의 핵심은 경찰조직이 범죄피해자를 위하여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범죄피해를 위한 유기적 활동의 기반조성은 우선 조직시스템을 개선함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즉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에 신설하고 전담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지원 전담부서는 범죄피해자를 위해서 경찰이 해야 할 역할과 기능을 제시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지속적으로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수립과 정책시행 그리고 시행결과에 대한 발전적 평가가 지속적으로 순환될 때 그 효과는 나타날 것으로 본다.

둘째로 범죄피해를 위한 유기적 활동의 기반조성은 범죄피해자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의 함양 등을 위한 경찰교육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 현재 경찰교육기관으로는 경찰대학과 경찰교육원·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이 있다. 이들 교육기관을 통하여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역할이 제시되어야 한다. 범죄피해자는 범죄자와 대립되는 위치에 있는 자이지만, 우리나라의 소중한 국민이고 편안한 사회활동을 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해야 할 존재이다. 국가의 책무를 경찰이 수행하는 것은 결코 경찰의 업무를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며, 범죄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보호 그리고 지원은 국가기관 중 어떤 기관에서도 수행할 수 없는 역할이라고 할 것이다. 신임 경찰채용시험에서 범죄피해자학의 선정

197) 북미와 유럽의 범죄피해실태 조사에서는 경찰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이 피해자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심화된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일본에서 실시된 범죄피해자 실태조사연구에 따르면,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중 수사과정에서 '제2차 피해'를 경험한 사람의 전체의 3할에 이르며, 그 대부분(90%)이 수사절차에서 경험한 제2차 피해를 범죄로 인한 피해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수사기관 종사자의 인식은 사뭇 달라서 "피해자가 다소 고통을 받더라도 수사에 협력할 의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椎橋隆幸·小木曾綾, 犯罪捜査と被害者保護, 犯罪被害者の研究, 成文堂, 1996, 137면).

도 필요하다. 과거 범죄에 대한 처리만을 강조할 경우에는 그 중요성이 낮을 수밖에 없지만 차후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역할이 강조된다면 신입경찰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초를 확보한다는 면에서 경찰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학의 내용이 포함되는 과목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범죄피해자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범죄피해자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 개인적 차원에서 학문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물론 법무부와 검찰 그리고 형사정책연구원이나 한국피해자학회에서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들의 연구가 단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경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경찰 자체적인 연구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2. 경찰 조직시스템의 개선방안

경찰의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조직시스템의 개선방안은 경찰의 조직 내에 범죄피해자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창설하는 것이다. 이미 범죄피해자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기존 조직을 상설 기구로 변경하는 것과 전담자를 배치함으로써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업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¹⁹⁸⁾

우선 경찰청에 인권국을 신설하고 인권국의 하부조직으로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범죄피해자를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여야 한다. 경찰의 조직에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역할이 한 단계 높아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본다.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역할이 증대될 때 경찰의 이미지 향상과 실질적인 국민의 경찰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

198) 각급경찰조직 단위별로 피해자 원조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제안한다(이기호, 앞의 논문, 35면).

가. 인권국의 신설

범죄피해자지원 전담 최고 부서로 경찰청에 ‘인권국’의 신설을 제안한다. 현재 기획조정·경무국·생활안전국·수사국·경비국·정보국·보안국·외사국(국장 치안감)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에 인권국을 신설하여 범죄피해자를 위한 보호와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¹⁹⁹⁾²⁰⁰⁾

인권국에 ‘인권과’와 ‘범죄피해자보호정책과’(과장 총경)를 두는 방안을 제안한다. 인권과는 경찰업무와 관련한 인권분야를 총괄하게 할 수 있고, 범죄피해자보호정책과에서는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의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적 사항을 관장하도록 할 수 있다.

인권국을 신설하는 방안으로 다음의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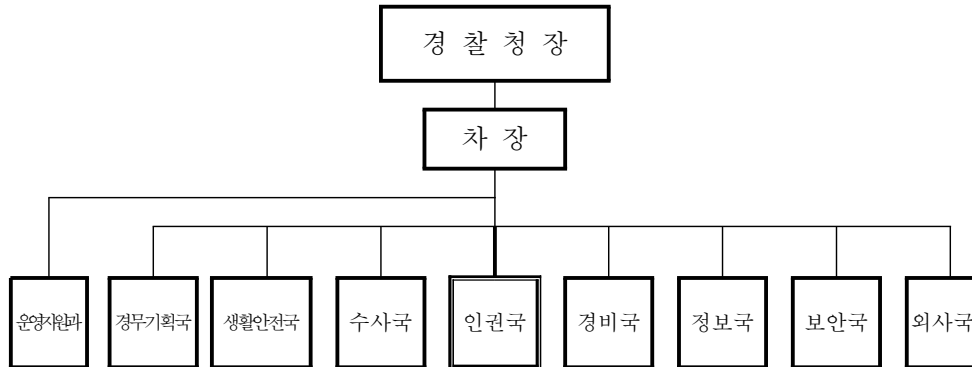
< 인권국 신설 제1안 >

제1안은 경찰청의 타 국과 동열의 지위를 갖는 형태이다. 국장은 치안감이 담당하도록 한다. 제1안의 조직구성은 다음의 <그림 3> 인권국 신설 제1안과 같다.

199) 일본의 경우 1996년 5월에 경찰청장관 관방급여후생과에 범죄피해자대책실이 설치되고, 뒤이어 각 도도부현 경찰에도 범죄피해자대책실이 설치됨으로써 경찰의 범죄피해자 대책에 관한 업무를 통합관장하게 되었으며, ... 미국의 경우는 연방법무부 사법제도실 산하에 범죄피해자대책실(Office for Victims of Crime : OVC)이 설치되어 전국피해자지원기구(National Organization of Victim of Assistance : NOVA)와 같은 피해자 지원 목적의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피해자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한 많은 주경찰이 민간인 전문가를 채용하여 경찰내부에서 피해자 처우문제를 대응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1974년 민간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피해자보호협회(Victim Support : VS)를 창설하였는데 이 단체에서는 경찰의 협조를 얻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신·심리적 상담이나 법적 대응방안 등에 관하여 조언을 행하고 형사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 내무성(Home Office) 형사국 산하에 사법제도 및 피해자반(Justice and Victims Unit)을 두고 피해자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에 피해자보호 대책 전담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김재민a, 앞의 논문, 151-152면).

200)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은 현대적인 인권상황 하에서 경찰이 국민의 권리 및 자유의 옹호자로서 피해자를 포함한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경찰활동의 기본원칙을 구성하고 실체화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강경래, 앞의 논문, 409면).

<그림 3> 인권국 신설 제1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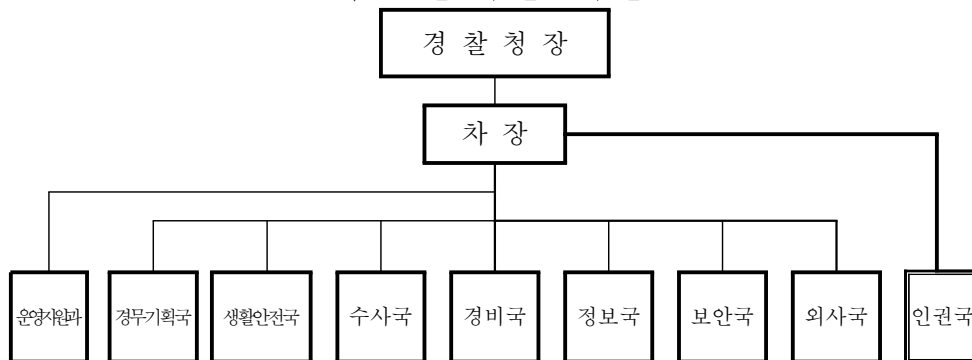


< 인권국 신설 제2안 >

제2안은 경찰차장(치안정감)의 직속 국으로 설치하고 국장을 경찰차장이 겸직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은 일면 경찰업무의 전 분야에 걸친 업무로 이해할 수 있다.

한 사건으로 처리되는 범죄의 경우에도 범죄피해자를 위한 역할에서는 경찰의 모든 업무와 관련되며,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역할수행에서도 국민과 접하는 모든 업무에 범죄피해자와 관련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제1안의 조직구성은 다음의 <그림 4> 인권국 신설 제2안과 같다.

<그림 4> 인권국 신설 제2안



나. 인권부(과)의 신설

인권부(서울·경기지방경찰청)나 인권과(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지방경찰청)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인권부(과)는 차장 직속기관으로 설치하여 지방청 산하 경찰서의 인권과 범죄피해자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범죄의 발생은 지역별로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범죄피해자의 특성도 또한 다양하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에 따른 대책이 실효성 있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적인 조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청의 인권국에서 제시되는 정책과 문제점의 개선책이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 중간기구로서 각 지방경찰청별로 인권부(과)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 인권과의 신설

인권과가 각 경찰서별로 신설되어야 한다.²⁰¹⁾ 인권과는 경찰서장 직속의 부서로 설치되어야 하며, 인권계와 범죄피해자보호계로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과장으로 변호사를 경정으로 특별 채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경찰에서 변호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여 인권보호와 범죄피해를 일선에서 담당하게 함으로써 경찰에 자체적인 법률전문가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변호사의 배출이 예상되어 있는 만큼 변호사의 선택범위가 확장되고 있다.²⁰²⁾ 이 시점에서 경찰이 인권과 범죄피해

201) 일본의 경우 ... 각급 경찰서에서도 피해자대책반을 각각 두고 피해자보호시책을 추진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대책을 경찰이 주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김재민a, 앞의 논문, 151면).

202) 경쟁률 16대 1 ... 국선변호사 찬밥은 옛말 : 17명을 뽑는 국선전담변호사 모집에 역대 최대인 179명의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39기)가 몰렸다. 국선변호사 지원 추이를 보면 2007년 20명 모집(경쟁률 2.6:1), 2008년 21명 모집(경쟁률 2.3:1), 2009년 44명 모집

를 담당할 전문가로 채용할 경우 어렵지 않게 우수한 법률전문가를 경찰에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로 하여금 범죄피해자에게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지휘하게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지원²⁰³⁾이 가능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경찰서에서는 직접적으로 범죄를 수사하고 범죄피해자를 접하는 일선 기관이므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인원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다른 업무를 제외하고 범죄피해자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찰에서의 범죄피해자와 관련하여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에 관한 국민적 인식이 적다고 생각되는데 가장 큰 원인은 범죄피해자를 위한 전담인력이 없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범죄피해자를 위한 역할은 매우 많다. 단순하게 범죄피해자를 위한 범인검거가 끝이 아니다. 범죄피해자가 겪는 많은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제거할 수 있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²⁰⁴⁾ 특히 범죄의 비전문가 이면서 공적인 권한을 갖지 못한 일반인과 경찰의 역할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선에서 피해자를 접하고 그들의 고통을 제거할 수 있는 전담인력으로서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존재는 매우 필요하다.

민간단체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범죄피해자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

(경쟁률 6.2:1), 2010년 17명 모집(경쟁률 16.3:1)이었다(중앙일보 2009. 12. 15).

203) 범죄피해자에게 부여된 갖가지 권리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법률구조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김성돈, 앞의 논문, 29면).

204) 수사를 행하는 경찰관이 직면하는 피해자의 피해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일차적으로는 피해자의 사망, 신체적 상해와 같은 육체적 충격을 받은 현장을 볼 수가 있고, 심리적 쇼크나 피해망상증 등과 같은 정신적 충격 등이 목격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경찰의 피해자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는 시간적 소모와 경제적 지출은 물론이고 명예훼손이나 인격적 상처와 같은 수사기관에 의한 간접적 피해를 받을 수 있고, 잊고 싶은 피해경험을 회고케 됨으로써 제2차적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범행사실을 규명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일에 여전히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수사경찰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피해자의 고통을 간과하기가 쉽다고 보인다(김재민a, 앞의 논문, 135면).

고 있는 법무부·검찰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민간단체의 경우는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체계적 조직화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법무부·검찰의 경우에는 정책의 조직적인 시행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인원의 한계²⁰⁵⁾를 극복하기 힘들기 때문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논의가 책상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인다.

검찰 자체가 범죄인의 처벌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경찰의 뒷받침이 없이는 실질적이며 유효한 보호와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책의 시행도 범죄에 관한 전문가로서의 경찰을 제외한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범죄피해자는 완벽한 문서상의 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 매일 진행되는 일상생활의 안전과 피해에 대한 정신적 안정 즉 범죄에 대한 두려움(Fear of Crime)²⁰⁶⁾으로부터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다.²⁰⁷⁾ 범죄의 피해를 입는 순간 범죄피해자는 어느 누구와도 같을 수 없는 새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이러한 고통은 범죄피해자에 관한 관심이 등한시될 때에는 개인적인 고통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국

205) 검사정원은 검찰총장을 포함하여 1,752명이며, 검사외의 검찰청정원은 기능직(9급·10급 2,116명을 포함)하여도 7,681명이다(부록 검사정원 및 검사외의 검찰청직원 정원 참조).

206) 본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란 ‘범죄의 피해를 받을 두려움’, ‘피해자가 되는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해자학의 중심적 과제이다(미야자와 고이치/장규원 역, 앞의 책, 39면); 잠재적인 피해자의 가능성으로 인한 사람들의 두려움과 이로 인한 활동의 제한은 범죄 그 자체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개인들 자신과 공동체 모두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범죄피해의 위협으로 인하여 사라들은 자신들의 일상 활동에 제한을 가하거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돈을 소비하고 결국에는 스트레스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한다(이민식, “범죄예방행위의 개념화와 측정”, 피해자학연구 제9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1, 183면).

207) 살인·강도·성폭력 등 강력사건의 경우, 피해정도가 심각하여 수사초기 단계에서 피해자 지원의 즉시성과 현장성, 종합성이 요구되며, 이러한 사건의 경우, 경찰 수사 초기단계부터 검찰의 담당검사 및 피해자지원담당관 등에게 피해상황 및 조치 필요사항을 알려 조기에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 ... 이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향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위원과 자원봉사자를 위촉할 때 경찰출신 인사 등을 많이 위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김현철, 앞의 논문, 98면).

가적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하고, 그 일선에는 경찰이 존재해야 된다.²⁰⁸⁾

또한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찰 전담자는 범죄피해자 자조모임²⁰⁹⁾에 대한 지원에도 참여하여야 한다. 자조모임은 범죄피해를 입었지만 자발적으로 피해를 극복하려는 사람들이므로 직접적으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범죄피해자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이다. 전국적인 경찰 전담자들의 범죄피해자를 위한 활동은 범죄예방과 진압에서도 범죄피해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협력을 자발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3. 경찰 교육시스템의 개선방안

가. 현행 경찰교육기관의 범죄피해자교육

1) 경찰대학

경찰대학(학부)은 2003학년도부터 대학생교육과정에 3학년 전공필수 과목으로 피해자학을 설강하고 있다(2학점).

208) 현재에도 피해자들은 검찰이나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피해자신변보호제도는 피해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지원방안이었다. 그러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았으며, 인지도도 낮았다. 피해자들이 느끼는 전반적인 범죄의 두려움도 심각하지만, 특히 가해자나 가해자가족의(에 의한) 보복의 두려움은 피해자들에게 범죄피해 못지않은 고통이다(김지영, 앞의 논문, 35면); 수사에 입하는 모든 경찰관은 ... 모든 수사활동을 진행함에 있어 피해자를 충분히 배려하는 정신을 가져야 하고 그러한 정신이 수사업무 수행시에 바람직한 행태가 되어 나타나도록 온갖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김재민a, 앞의 논문, 165면).

209) 자조모임은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위안과 범죄피해로 인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인데, ... 먼저 피해를 당한 사람이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동시에, 자신이 당한 피해에서 빠져나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통해 스스로 치유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김지영, 위의 논문, 36면).

총경 및 총경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안정책과정에서는 22주 836시간 중 범죄피해자학 3시간이 배정되어 있다. 그 교육은 주로 수사 일선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사례를 제기하고 그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²¹⁰⁾

경정 및 경정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교육과정은 4주 152시간 중에서 피해자 관련 교과목은 2시간을 교육하고 있다.²¹¹⁾ 경감 및 경감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교육과정은 3주 114시간 중에서 피해자 관련 교과목은 2시간으로 편성되어 있다.²¹²⁾ 그리고 경찰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경찰홍보과정²¹³⁾ 등 11개 전문교육과정²¹⁴⁾에서는 피해자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

2) 경찰교육원

경위 이하 기본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경찰교육원에는 2005년 현재 경찰간부후보생과정 1개, 경위기본교육과정과 경사기본교육과정 등 2개, 외사경찰실무과정과 기능별직무교육과정²¹⁵⁾ 등 41개, 해경신임순경과정

210) 김용세·김재민, 앞의 책, 139면.

211) 김용세·김재민, 위의 책, 140면.

212) 김용세·김재민, 위의 책, 141면.

213) 대언론 관계의 중요성과 경찰공보의 이해, 보도자료 및 보도예상·진상보고 작성실습, 언론관계자 특강, 경찰관련 보도사례 발표 및 연구 토의 등을 중점 교육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김용세·김재민, 위의 책, 141면).

214) 청문감사과정, 정보검색사과정, 경리회계과정, 기획예산과정, 민간경비 관리과정, 리더십 향상과정, 창의력 향상과정, 송무실무과정, 행정혁신과정, 미래설계과정 등이 있다.

215) CIA국제대테러과정, 게임장지도실무과정, 경리실무과정, 경비관리자과정, 경비실무과정, 경찰인권과정, 교수요원양성과정, 교통관리자과정, 교통사고야기도주사건수사과정, 교통사고조사과정, 교통안전시설관리과정, 교통외근과정, 국제범죄수사과정, 무도사범과정, 민원담당관실무과정, 민원행정과정, 사격관리자과정, 사격훈련과정, 생활안전관리자과정, 생활안전실무과정, 수사요원양성과정, 외국어전문과정, 외사경찰실무과정, 운전면허행정처분관리과정, 인터넷과정(중급), 장비실무과정, 전경대기간요원과정, 전술지휘과정, 전의경관리과정, 정보관리자과정, 정보실무과정, 정보채증과정, 정보통신요원과정, 지방학교교수요원과정, 지역경찰관리자과정, 지역경찰실무과정, 청소년범죄대책과정, 총포화약지도실무과정, 풍속지도실무과정, 해경신임순경과정, 해경초급간부경사과정, 해경초급간부경위과정 등이 있다.

등 수탁교육과정 3개 등 총 47개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경찰교육원에서의 대부분의 교육과정에 범죄피해자 관련 교과목이 편성되어 있지 아니다. 단지 3주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수사요원양성과정에만 피해자 관련 직무과목이 3시간 배정되어 있을 뿐이다.²¹⁶⁾

3) 중앙경찰학교

중앙경찰학교에서는 신입순경을 대상으로 일반순경과정 등 6개, 전의경교육과정으로 의무경찰과정 등 5개 등 총 11개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피해자관련 교과목으로는 신입순경과정 24주(840시간) 중 인권 20시간(범죄피해자의 이해 3시간, 시민단체의 이해 3시간, 장애인의 이해 3시간, 장애인 체험 4시간, 인권의 이해 2시간, 인권감수성 키우기 5시간)과 형사특별법에 성폭력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3시간이 이루어지고 있다.²¹⁷⁾

4) 경찰수사연수원

수사직무를 담당하는 현직경찰의 교육을 담당하는 경찰수사연수원에서는 23개²¹⁸⁾ 전문교육과정 중 피해자서포터 전문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다.²¹⁹⁾

나. 범죄피해자 관련 교육의 확대 필요성

216) 김용세·김재민, 앞의 책, 136면.

217) 김용세·김재민, 위의 책, 146면.

218) 강력범죄수사전문과정, 공공지능범죄수사전문과정, 과학수사기법전문과정, 금융경제범죄수사전문과정, 디지털증거분석전문수사과정, 마약류전문수사과정, 범죄분석전문과정, 범죄정보시스템분석전문과정, 보건·환경범죄수사전문과정, 보안수사전문과정, 보안수사지휘전문과정, 보안실무전문과정, 사이버범죄수사전문과정, 선거범죄수사전문과정, 여성폭력 예방예방수사전문과정, 일반수사기법과정, 조직폭력범죄수사전문과정, 총기범죄수사전문과정, 테러인질범죄수사전문과정, 피해자서포터전문과정, 현장감식전문과정, 화재수사전문과정 등이 있다.

219) 김용세·김재민, 앞의 책, 138면.

2004년 이후 경찰청의 노력은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변화로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하지만 아직 경찰의 피해자대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경찰이 피해자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식수준은 충분하지 못하다.²²⁰⁾ 따라서 경찰공무원에 대한 범죄피해자 교육과 훈련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²²¹⁾

가정폭력이 빈발하고 있지만 가정폭력 사건현장에 입장하는 경찰관이 겪는 고충 중의 하나는 그 가해자를 체포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²²²⁾

피해자와 관련하여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피해자보호에 관한 직무집행의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경찰의 지식수준을 확인하는 시스템도 구성되어 있지 않다. 국민들은 경찰의 피해자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대학과 중앙경찰학교의 신입경찰관 교육훈련과정 및 계급별 기본교육과정에서의 2시간 내지 3시간의 피해자학 또는 피해자보호 관련과목의 개설만으로는 범죄피해자의 보호나 지원의 필요성을 이해시킬 수 있겠지만 피해자의 보호나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220) 피해자보호가 자연스럽고도 일상적인 직무집행의 일부로 정착되지는 못하였기 때문이다 (김용세·김재민, 위의 책, 165면).

221) 이건호, 앞의 책, 238면.

222) 가정폭력 현장에 대한 위기개입시 경찰관의 재량권 행사와 연관된다. ... 가정폭력이 발생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때, 가해자가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았을 경우, 체포되었다가 불구속 수사로 전환된 경우,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나오게 된 경우, 체포나 구속되지 않은 채 임시조치(퇴거명령이나 접근금지)를 받은 상태에 있는 경우 등 각종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얼마든지 위해를 당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때에 그 위험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대한 과제로 대두되는 것이다(김재민, “가정폭력 피해자 신변안전확보 과정에서의 수사 경찰의 위험성 평가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6, 327-328면).

다. 범죄피해자 관련 교육의 개선방안

1) 교육개선의 방향

모든 경찰이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²²³⁾ 다만 업무수행과정에서 최소한의 피해자를 배려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춘다면 될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제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²²⁴⁾ 수사경찰이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인식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면 될 것이다.²²⁵⁾

그러나 피해자를 전담하는 경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다양한 범죄의 피해자와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대응하여야 하며, 범죄피해자에 대한 애정과 국가기관 중 형사사법기관의 종사자로서 국가적 책무를 가지고 국가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인 국민을 위한 중요한 업무를 행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피해자를 전담하는 경찰의 경우에는 피해관련 법규와 실무능력 외에 인간 본성과 심리에 대한 전문적 지식도 필요하며 특히 장기간의 임상실습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전문가도 과학수사나 정보통신과 같

223) 수사경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언제나 범인을 검거하고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일이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이 아니다(김용세·김재민, 위의 책, 170면).

224)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고정관념에 의해 범할 수 있는 형태적 오류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출동하는 경찰관의 전형적 고정관념(Stereotyping)으로 인해 피해자가 경찰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하거나 범인 검거에 실패함으로써 피해상황을 바로 단절 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신체적(physical), 행위적(actional), 상황적(situational) 고정관념 등이 그것이다(김재민a, 앞의 논문, 156면).

225) 수사경찰은 제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하지만, 수사 경찰관 모두가 각자 피해자보호 조치를 완전히 종결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적 역량을 갖출 수는 없다(김용세·김재민, 위의 책, 171면).

은 전문영역으로 분류하여 특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직무영역에 따라서 교육이나 훈련이 차별화될 수 있어야 한다. 보통 일반영역의 교육에서 추구하는 정도는 피해자를 위한 경찰역할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라고 한다면 전문영역의 교육은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를 입은 후에 갖게 되는 많은 고통을 시의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접근하여 범죄의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교육이 세분화되어 제시되어야 한다.

2) 상시교육

상시교육은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예컨대 직장 훈련을 통하여서도 가능하다. 교과내용은 주로 관련 지침이나 규정을 숙지하며, 범죄피해자와 경찰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 및 경찰의 역할 등에 대한 것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 범죄피해자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하는 미디어의 시청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상시교육의 중요성은 다양한 피해자와 직·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경찰은 피해자를 위한 실무를 담당하는 경찰만 아니라 모든 경찰이라고 할 수 있고, 모든 경찰이 범죄피해자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 경찰의 범죄피해자를 위한 역할과 위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상시교육을 통한 일반화된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입장이 정착될 때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이미지는 새롭게 형성될 것이다.

3) 일반재직자 교육과정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되 신입경찰관 교육과정이나 계급별 기본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겠다. 교과내용으로는 (범죄)피해자학, 범죄피해자의 심리, 역할극을 통한 실습,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 등이 구성될 수 있다.

4) 심화교육과정

범죄피해자와 밀접하게 활동하는 경찰들을 대상²²⁶⁾으로 전문교육과정²²⁷⁾에서 4일(28시간)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다. 교과내용으로는 (범죄)피해자학, 범죄피해자의 심리, 역할극을 통한 실습,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 등 외에 피해사례의 소개와 피해자와의 상담실습, 피해자대응요령, 피해자별 특성에 따른 대응방법, 민간조직과의 협력방안 등이 될 수 있다.

5) 피해자대책 전문가 양성과정

경찰청이나 지방경찰청 그리고 경찰서의 피해자대책계 근무자나 피해자보호 담당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경찰의 피해자대책의 수립과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화된 교육이 되어야 한다.²²⁸⁾

라. 경찰시험과목으로서의 피해자학 신설

경찰이 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목적으로 범인의 검거와 사법처리를 위한 전단계의 업무에 중심을 둔다면 현재의 시험과목과 교육으로도 적절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에 관한 경찰의 노력이 증대되고 그 필요성이 강조된다면 경찰시험과목으로 (범죄)피해자학이 필수적으로 선정이 되어야 한다.

226) 수사경과, 여성청소년계, 교통사고조사계, 민원상담실, 청문감사관실, 순찰지구대 근무자 등이 있다.

227) 청문감사과정, 리더쉽향상과정, 외사경찰과정, 국제범죄수사과정, 대테러과정, 경찰인권과정, 생활안전과정, 지역경찰과정, 민원담당관과정, 청소년범죄대책과정, 수사요원양성과정, 경비과정, 교통외근·교통사고조사·도주사건수사과정 등이 있다.

228)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피해자대책 전문가 양성과정만은 신설 전문교육과정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은 한국 경찰의 피해자대책 전문요원으로서 최상급의 피해자 지원을 제공하고, 다른 경찰관에 대한 교육을 담당할만한 지식과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되어야 한다(김용세·김재민, 앞의 책, 172면).

시험과목이 갖는 의미는 단순한 지적 수준을 높이는 효과도 있겠지만 실제로 활동함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에 더 중심이 된다. 그렇다면 경찰의 활동이 과거 범죄에 중심을 두던 입장에서 새롭게 범죄 피해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피해자학이 시험과목으로 선정된다면 그 효과는 매우 커질 것이다. 경찰이 되려는 수험생에게는 필수적인 연구 분야가 될 뿐만 아니라 학생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인 대학과 학원은 범죄 피해자에 관하여 관심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찰의 이러한 노력이 바른 평가를 받게 되면 수험과목으로서 피해자학은 일반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선순환 된다면 범죄피해자에 관한 시각의 변화와 제도의 내실화는 머지않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4. 경찰 연구시스템의 개선방안

범죄피해자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는 경찰 외의 다양한 학자들의 연구 성과에 의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경찰만의 독자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도 있다. 범죄에 관한 분석과 피해자에 관한 적절한 대책의 수립은 민간에서도 필요하지만 경찰을 이해하고 경찰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경찰의 연구에 의하여 가능할 뿐 아니라 경찰의 독자적인 연구결과를 통하여 진행되는 것이 경찰의 범죄피해자지원에서도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현재 경찰과 관련한 연구기관은 경찰대학부설 치안정책연구소가 유일하다.²²⁹⁾ 따라서 치안정책연구소에 범죄피해자를 위한 전문연구영역이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²³⁰⁾ 경찰에서 필요한 전문연구에 충실할 뿐만 아

229) 물론 경찰대학의 교수에 의한 연구결과가 매년 학회지 등을 통하여 발표되고 있기도 하지만 범죄피해자에 관한 연구는 연구자의 개인적 관심에 의한 것일 뿐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장기적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없다고 보인다.

나라, 경찰 외부에서 발표되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경찰을 위한 연구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경찰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자료의 축적이 이루어진다면 경찰의 범죄피해자를 위한 역할수행의 기초가 될 것이다.

경찰의 범죄피해자를 위한 연구영역을 다양하다. 경찰이 수행하는 수사에서부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는 아동성폭행이나 가정폭력에 대한 접근방법도 범죄피해자를 위한 관점에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 수사권과 관련된 검찰의 주장 중 경찰은 인권을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주장은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변화할 때 주장의 논거를 쉽게 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경찰의 관점에서 범죄피해자를 어떻게 지원하는가 하는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지속적이며 폭넓은 연구가 절실히 된다는 판단은 결코 시대에 앞선 주장이 아닐 것이다.

범죄피해자를 위한 연구부서가 확정된다면 경찰청의 인권국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구체적인 연구의 진행이 가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범죄별 피해자보호와 지원을 위한 경찰 역할의 연구는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그리고 경찰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피해자 관련 문제점에 대한 대책의 연구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제 외국의 정책을 비교하여 경찰차원의 범죄피해자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민간단체의 범죄피해자를 위한 역할과 경찰의 역할의 조정 내지 조화를 위한 연구와 형사사법기관으로서의 법무부 및 검찰의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의 연구도 경찰의 범죄피해자를 위한 활동과 밀접한 분야로서 연구의 필요성도 절실하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임무수행 중 입게 되는 경찰의 피해에 대해서도 범죄피해자지원의 차원에서 적극적인

230) 2010년 6월 현재 치안정책연구소는 소장, 2부(부장 2명), 연구실 및 기획운영과(운영계)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실은 정책기획연구실, 사회안정대책연구실, 안보대책연구실, 생활안전대책연구실, 교통대책연구실, 범죄수사연구실, 수사구조개혁연구실 등 7개의 연구실이 있다.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다.

범죄피해자를 위한 국가기관으로서의 경찰이 그 지위를 확고히 하고 경찰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과정은 간접적으로는 국민이 인정하는 국민의 경찰로 탈바꿈함으로써 경찰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발전하는 기틀이 될 수 있다. 선진국에서 경찰의 역할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로부터의 위험을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국민의 범죄로부터의 피해회복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경찰이 현재의 상태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선진 경찰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것이다.

제5장 결론

경찰법 제3조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지 않더라도 경찰이 범죄와 밀접한 활동을 하면서 범죄피해자를 위한 역할을 모색하는 것은 경찰 본연의 임무이며 범죄피해자를 위한 국가의 책무에 부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범죄는 가해자만 존재하는 일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양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가해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찰의 역할에서는 범죄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경찰의 범죄피해자를 위한 역할은 과거 어느 때보다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보호법의 개정과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의 제정은 국가가 범죄피해자를 위한 국가적 책무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범죄피해자를 위한 많은 연구와 관련자들의 노력이 조화롭게 결합됨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최근 경찰의 범죄피해자를 위한 역할에 기대를 거는 요청은 범죄피해자를 위한 역할수행에 있어서 경찰이 가장 책임자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시스템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시대적 조류에 함께 하여야 한다.

경찰은 민간단체가 갖지 못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경찰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진 국가기관으로서

범죄에 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범죄인과 범죄피해자를 가장 잘 이해하고, 범죄에 관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세계적인 변화에 맞추어 경찰의 범죄피해자지원시스템의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현재 범죄피해자보호규칙을 근거로 구성되어 활동하는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나 피해자보호실무위원회의 형태보다는 경찰청에 인권국을 신설함으로써 실질적인 범죄피해자보호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안한다. 인권국을 신설함은 범죄피해자를 위한 전담 경찰을 배치함을 의미하고 따라서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둘째로, 경찰교육에 있어서도 전문적인 범죄피해자보호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제안한다.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찰교육은 일반 경찰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을 위한 교육과 전문적인 범죄피해자를 위한 전담자를 위한 교육이 구별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범죄피해자를 위한 교육은 일회성 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무에서도 반영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 실제로 범죄피해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무가 일선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로, 범죄피해자를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제안한다. 경찰의 유일한 연구기관인 치안정책연구소에 범죄피해자를 연구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하여야 한다. 과거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만족하였던 연구에서 범죄피해자에 관한 연구까지 담당하여야 하는 시점에 있다.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역할의 수행과 교육역량의 강화 및 실질적인 경찰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은 범죄피해자에 관한 연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연구는 단기적인 대책에서부터 장기적인 대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범죄에서 발생

하는 범죄피해자의 효과적인 보호와 지원책이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개선방안은 경찰의 범죄피해자를 위한 조직의 운영에서 ONE-STOP-SERVICE형태로 이루어질 때 그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ONE-STOP-SERVICE형태는 범죄피해자가 경찰로부터 일대 일 대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범죄에 대한 경찰의 역할이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역할로 확대되는 것이다. 경찰이 범죄의 예방과 진압 그리고 범죄인의 처벌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듯이 범죄피해자의 발생과 함께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범죄의 발생과 동시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범죄인을 체포하는 등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듯이 범죄의 발행과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 범죄피해자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ONE-STOP-SERVICE는 경찰이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의미 이외에 국가의 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의미이다.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자이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범죄피해자의 권리다. 범죄피해자가 정상적인 국민으로서 국가발전을 위하여 해야 할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될 때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능동적으로 조성하여 주어야 하며, 이를 국가가 방임할 때 국가가 입게 되는 인적·물적 피해는 측정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다.

경찰이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대책을 찾아야 한다. 그 타개책을 경찰이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범죄피해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국가기관으로 탈바꿈함으로써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새로운 정책의 시행이 기존의 조직과 예산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 하

지만, 이 경우 오랜 시간이 걸림으로써 그 정책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적시에 적합한 조직과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바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될 것이다. 중환자에게 매우 유용한 약이나 시술방법도 그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의미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참 고 문 헌

I. 국내문헌

1. 단행본

경찰청, 2009 경찰백서, 2009.

경찰청, CARE팀 범죄피해자 지원 우수사례 희망으로의 한걸음,
2007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7.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김용세, 피해자학, 형설출판사, 2009.

김용세·김재민, 범죄현장에서의 피해자보호와 경찰관 교육방안, 치안정
책연구소, 2006.

김지선·이동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현황 및 활성화 방안,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2006.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9.

대검찰청, 2009 검찰연감, 2009.

미야자와 고이치/장규원 역, 피해자학 입문, 길안사, 1999.

이건호, 범죄피해자 구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전수영, 범죄피해자 보호방안, 한국학술정보, 2009.

정종섭, 헌법연구 5, 박영사, 2005.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9.

황태정, 범죄피해자보호 관련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2. 논문

강경래, “민간 피해자지원조직과 경찰의 협력방안”, 피해자학연구 제 14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6.

김덕재,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개선 방안:법무부 범죄 피해자보호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82호, 한국법학원, 2004.

김성돈,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을 위한 회복적 패러다임의 실천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6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8.

김성돈, “우리나라 피해자학의 연구동향”, 피해자학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

김용세·류병관, “피해자학의 발전과 피해자보호의 최신 동향”, 피해자학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2.

김용세, “일본에서의 피해자학 연구동향”, 피해자학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

김은주·이대성·이미정·이창한, “강간에 대한 경찰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9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1.

김재민a,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경찰의 행태변화를 위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3.

김재민, “가정폭력 피해자 신변안전확보 과정에서의 수사경찰의 위험성 평가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6.

- 김지선,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결과와 쟁점들”,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6.
- 김지영, “강력범죄 피해자와 피해자가족의 피해실태”, 범죄피해자의 피해실태와 보호·지원정책, 제1회 형사사법포럼 자료집, 법무연수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 김현철, “2010년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중점 추진방향”, 범죄피해자의 피해실태와 보호·지원정책, 제1회 형사사법포럼 자료집, 법무연수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 노성호, “집단따돌림을 통한 피해와 그 영향”, 피해자학연구 제9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1.
- 노성호, “호주의 피해자학 동향”, 피해자학연구 제8호, 한국피해자학회, 2000.
- 도중진,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고찰”, 피해자학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2.
- 문성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적 보호의 확대”, 범죄피해자에 대한 Care, 한국피해자학회 2009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피해자학회, 2009.
- 류전철, “오스트리아·스위스에 있어서 피해자학 연구동향”, 피해자학연구 제8호, 한국피해자학회, 2000.
- 박강우, “프랑스에서의 피해자학 연구동향”, 피해자학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
- 박광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실태와 연계강화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7권 제1호, 2009.
- 박광민, “범죄피해자의 양형절차에의 참여”, 범죄피해자의 피해실태와

- 보호·지원정책, 제1회 형사사법포럼 자료집, 법무연수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 박미숙, “현행법상 범죄피해자 지원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0권 2호, 2002.
- 박상식, “회복적 사법 실천모델의 효과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6.
- 박순진, “경찰의 폭력범죄 피해에 대한 고찰”, 피해자학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
- 박철현, “대학의 특성과 캠퍼스범죄피해”, 피해자학연구 제9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1.
- 박철현, “캐나다의 피해자학 연구동향”, 피해자학연구 제8호, 한국피해자학회, 2000.
- 송광섭,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지위 강화”, 피해자학연구 제8호, 한국피해자학회, 2000.
- 신연희·채규만, “강간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과 치유 프로그램의 방향”, 피해자학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10.
- 심연주, “범죄피해자 Care의 실제-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햇살’을 중심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Care, 한국피해자학회 2009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피해자학회, 2009.
- 안희준, “한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동향과 발전방향”, 피해자학연구 제17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9.
- 양문승, “매 맞는 여성 신드롬(BWS)의 피해자화이론과 회복적 사법”, 피해자학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3.
- 양문승, “우리나라 피해자학의 정상과학으로서의 모색”, 피해자학연구

-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
- 오경식,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방안 연구, 법무부, 2007.
- 윤상민,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성폭력상담소의 지원을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6.
- 윤희중, “일본의 범죄피해자 지원네트워크 구축과 피해당사자에 관한 고찰”, 피해자학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3.
- 이기호,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 피해자학연구 제4호, 한국피해자학회, 1996.
- 이동원,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전망-피해자지원센터 근무자의 평가를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10.
- 이민식, “범죄예방행위의 개념화와 측정”, 피해자학연구 제9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1.
- 이상원, “범죄피해자기금의 설립 및 운용방안”, 범죄피해자와 인권 (2008년 법무부 용역연구), 법무부 인권국, 2008.
- 이순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최근 피해자학 연구동향”, 피해자학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
- 이진국, “회복적 사법과 형사사법의 관계에 관한 소고”,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6.
- 이찬엽, “형사법상 피해자의 지위와 인정범위에 관한 소고”,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6.
- 이호중,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보호를 위한 개선방향”, 저스티스 제27

권 제2호, 한국법학원, 1995.

이효원, “범죄피해자의 헌법상 기본권보호”, 서울대학교 법학 제50권 제4호(통권 제15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이훈구, “존속살해사건의 심리학적 조명-이은석 사건을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3.

조균석, “형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 참가제도의 도입 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10.

진수명,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피해자학 연구동향-피해조사를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제8호, 한국피해자학회, 2000.

최병각, “피해자의 형사절차 활용방안”, 피해자학연구 제8호, 한국피해자학회, 2000.

최석윤, “미국에서의 피해자학 연구동향”, 피해자학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

3. 기타

신부용, “교통사고 피해 연 34만 명이 운다”, 동아일보 2010.1.14.

II. 외국문헌

長井 進, 犯罪被害者の心理と支援, ナカニシヤ出版, 2004.

諸澤英道, 被害者學入門, 成文堂, 1992.

椎橋隆幸·小木曾綾, 犯罪捜査と被害者保護, 犯罪被害者の研究, 成文堂, 1996.

Ann Wolbert Burgess·Chery Regehr·Albert R. Roberts,

Victimology, JONES AND BARTLETT PUBLISHERS, 2010.

Benjamin Mendelsohn, "The origin of the doctrine of victimology", Victimology, edited by Paul Rock, Dartmouth, 1994.

Eve S. Buzawa, et al, Domestic Violence : The Criminal Justice Response, Thousand O만, CA: Sage. 2003.

Marshall, T., "Criminal Mediation in Great Britain 1980-1996", European Journal on Criminal Policy and Research, 1996.

Hassemer, W./Reemtsma, J.PH., Verbrechensopfer, Gesetz und Gerechtigkeit, 2000.

John Braithwaite, "A Future Where Punishment Is Marginalized: Realistic or Utopian?", UCLAL. Rew(46), 1999.

Wemmers, J., Victim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msterdam: Kugler, 1996.

부 록

1. 검사정원
2. 검사외의 검찰청직원 정원
3.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명칭 및 소재지

1. 검사정원

(단위 : 명)

직위	수	합계
검찰총장	1	1,752
대검찰청차장검사·고등검찰청검사장	6	
대검찰청검사·지방검찰청검사장·고등검찰청차장검사	30	
고등검찰청부장검사	3	
지방검찰청차장검사	24	
부를 두는 지청의 지청장	22	
지방검찰청지청차장검사·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부장검사·고등검찰청검사	308	
지청장	16	
검찰연구관	29	
기획관·담당관	9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검사	1,304	

출처 : 2009 검찰연감

2. 검사외의 검찰청직원 정원 (단위 : 명)

직위	7,681
별정직	18
비상계획담당관(4급상당)	1
비상계획보좌관(5급상당)	1
마약감식관(5급상당)	1
비서(6급상당)	3
현장사진감식·문서감정담당(6급상당)	1
마약감식담당(7급상당)	1
통역원(7급상당)	1
음성·심리분석담당(7급상당)	5
형사사진감식·문서감정담당(7급상당)	4
일반직	5,547
교위공무원단	25
3급	10
검찰부이사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	10
4급	163
검찰수사서기관	116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비서관)	1
전산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	1
검찰수사서기관·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	45
5급	305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	273
마약수사사무관	13
마약수사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마약담당)	5
검찰사무관·싸사무관·마약수사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비서관)	6
전기사무관 또는 기계사무관	1
건축사무관 또는 기계사무관	1
전산사무관·전무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6
6급	1,333
검찰주사	1,223
마약수사주사	58
전기주사 또는 기계주사	6
건축주사 또는 기계주사	2
전산주사·전무주사·통신주사·전송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44
7급	1,525
검찰주사보	1,378
검찰주사보(속기사 계약7호)	28
마약수사주사보	64
사서주사보	2
건축주사보 또는 기계주사보	2
전기주사보	1
전산주사보·전송주사보·전무주사보·통신주사보 또는 전자통신주사보	50
8급	1,144
검찰서기 등	1,144
9급	1,042
검찰서기보·마약수사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전송서기보 등	1,031
연구관(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4
연구사(공업연구사·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기록연구사)	7
기능직(기능 9급·10급)	2,116
건축원·전기원·기계원·위생원·방호원 등	2,116

출처 : 2009 검찰연감

3.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명칭 및 소재지

번호	명칭	소재지
1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서울중앙지검 B 111호
2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울동부지검 신관 144호
3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울남부지검 313호
4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울북부지검 257호
5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울서부지검 916호
6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의정부지검 109호
7	고양·과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고양지청 711호
8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천지검 1106호
9	부천·김포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부천지청 314호
10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수원지검 143호
11	성남·광주·하남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성남지청 신관 272호
12	여주·이천·양평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주지청 204호
13	평택·안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평택 비전동 848 구시의회건물 1층
14	안산·광명·시흥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산지청 202호
15	춘천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춘천 효자1동 674-19 1층
16	강릉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강릉지청 111호
17	원주·횡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원주지청 별관 2층
18	속초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속초시 동명동 280-2 동명빌딩 2층
19	영월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영월군 영월읍 영흥8리 866-6
20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전지검 209호
21	홍성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홍성지청 310호
22	공주·청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공주지청 208호
23	논산·부여·계룡범죄피해자지원센터	논산지청 207호
24	충남서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산지청 312호
25	천안·아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천안지청 본관 1층
26	청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청주지검 212호
27	충주·음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충주지청 108호
28	제천·단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천지청 3층
29	영동·옥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영동지청 별관
30	대구·경북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구지검 2315호

번호	명칭	소재지
31	경북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동지청 205호
32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주시 노동동 12 사적공원관리사무소 2층
33	포항범죄피해자지원센터	포항시 죽도 2동 73-6(구여성회관)
34	김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김천시 남산동 49-15
35	구미범죄피해자지원센터	구미시 공단동 256-17 시민복지회관 2층
36	상주문경·예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주지청 108호
37	의성·군위·청송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의성지청 206호
38	영덕·울진·영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북 영덕군 영덕읍 남석리 69-39
39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부산 동래구 명원1동 533-230 울곡빌딩 905호
40	부산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부산 동부지청 418호
41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울산 남구 옥동 289-3 건강빌딩 3층
42	범죄피해자지원센터경남본부	창원지검 103호
43	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진주시 본성동 6-10 1층
44	통영범죄피해자지원센터	통영시 도천동 28 통영시청 별관 3층
45	거제범죄피해자지원센터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136-12
46	고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47	밀양·창녕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밀양지청 212호
48	경남서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거창지청 별관
49	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광주지검 208호
50	목포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목포지청 2층
51	장흥·강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20-105
52	전남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순천지청 526호
53	해남·완도·진도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해남지청 2층
54	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진주지검 별관 134호
55	군산·익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군산지청 508호
56	정읍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정읍지청 412호
57	남원·순창·장수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남원지청 별관 1층
58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주지검 206호

* 진하게 표시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검찰청 외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경우임.

책임연구보고서 2010-08

경찰의 범죄피해자지원시스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0년 9월 30일 발행

발행인 : 이 중 우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동1길 29

홈페이지 : www.psi.go.kr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POLICE SCIENCE INSTITUTE